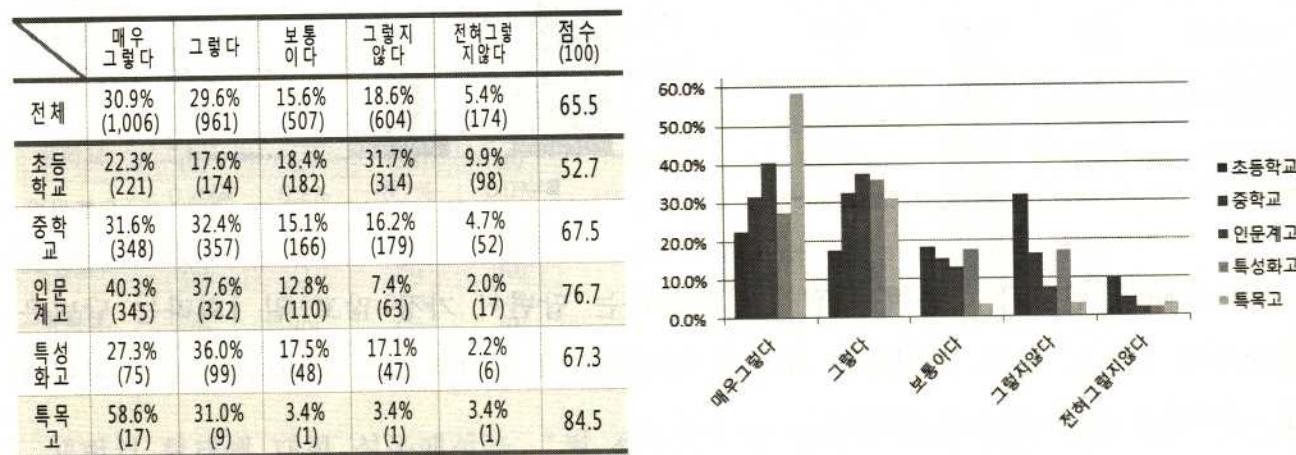


다만 학생들에 대한 집단면접조사에서 나타난 학생자치 현황은 그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학교와 교사 측의 장려와 실제 학생자치 활동의 수준 간 간극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2) 학생회 공간이 별도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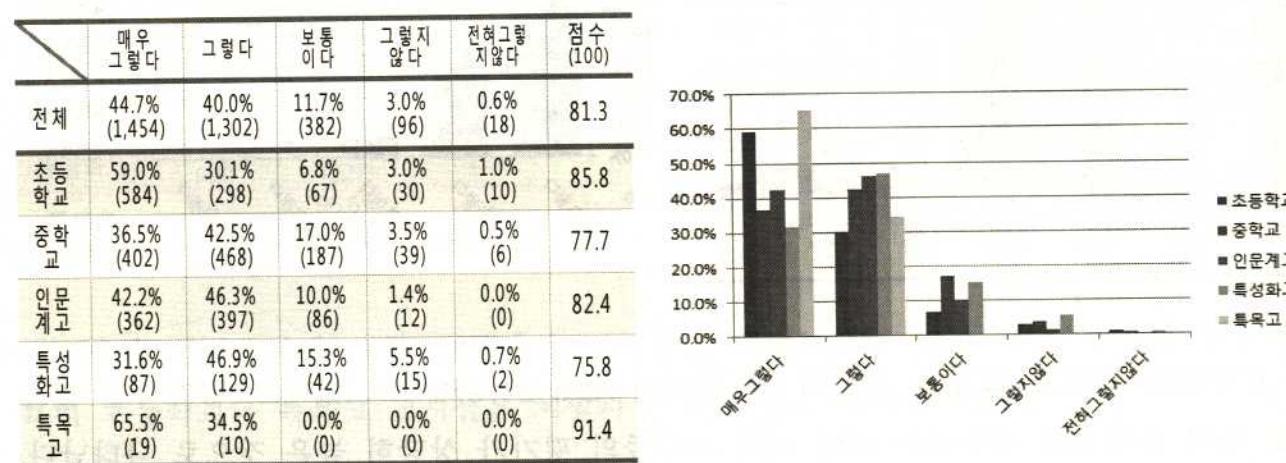
<표 II-72> 학생회 공간 여부(교사)



다른 설문에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생인권 현황을 보여주었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설문과 마찬가지로 교사 설문에서도 학생회 공간에 대하여는 현저히 낮은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 5-3)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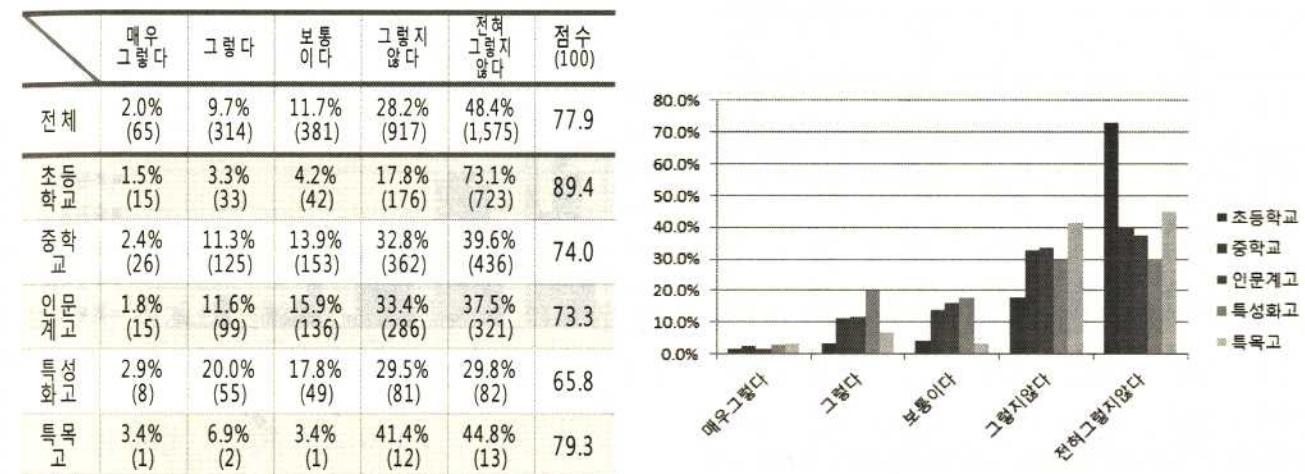
<표 II-73> 정기 학생회 여부(교사)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지에 대하여 중학교와 특성화고 교사들의 답변에서 다소 낮은 평가가 나왔으며, 특목고의 경우 학생자치 부분에서는 계속하여 이 설문에서도 교사들의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 5-4) 학급대표나 학생대표로 출마할 경우 자격 제한 조건(성적, 출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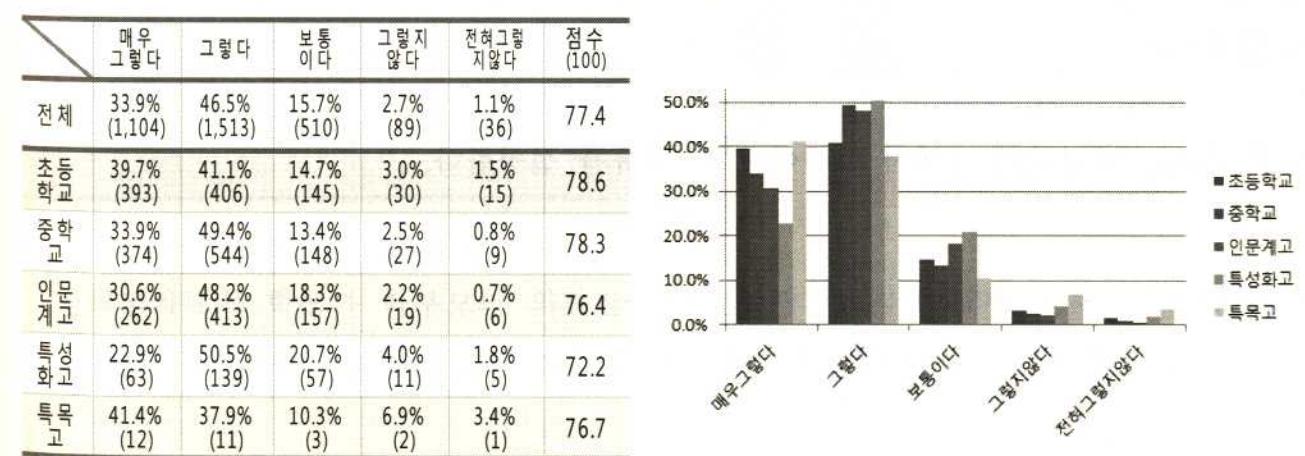
<표 II-74> 학생 대표 자격제한 여부(교사)



학생대표 출마에 자격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특성화고 교사들이 눈에 띠게 자격 제한이 있다는 답변율이 높으며, 반대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율이 73.1%나 되었다.

### 5-5)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정책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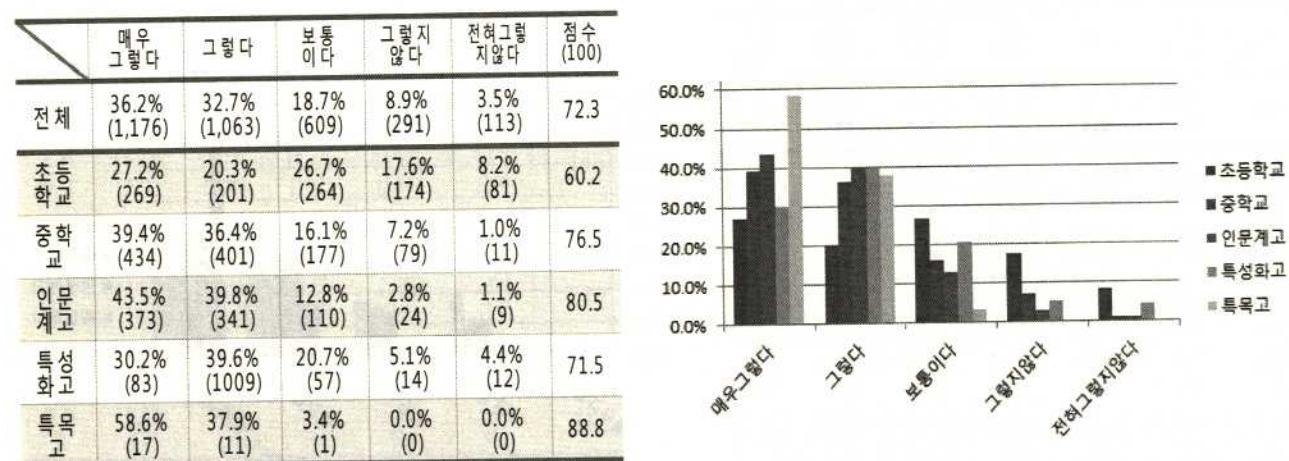
<표 II-75> 학생회 의견 반영 여부(교사)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정책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문에 대하여 교사들은 대체로 그렇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목고 교사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41.4%나 되었다.

#### 5-6) 학교는 학생회가 주관하고 기획하는 행사(운동회, 축제, 수학여행 등)를 실시한다.

<표 II-76> 학생회 주관 행사 여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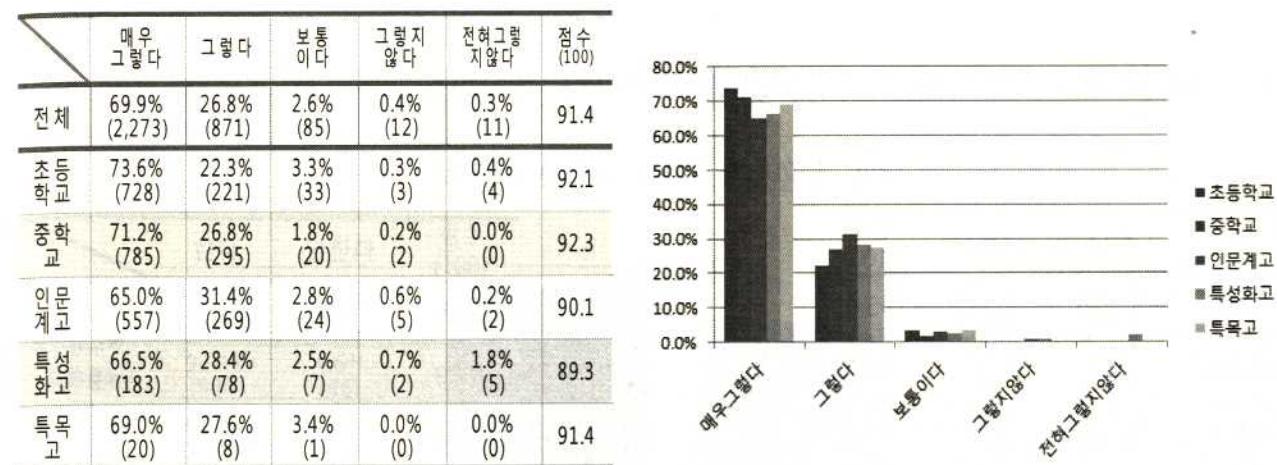


학생회 주관의 행사에 대한 설문에서도 특목고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 37.9%가 ‘그렇다’는 답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학생자치 현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이하게 초등학교 교사들 25.8%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는데, 초등학교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 6. 학생지도

##### 6-1) 학교는 별점이나 징계시 학생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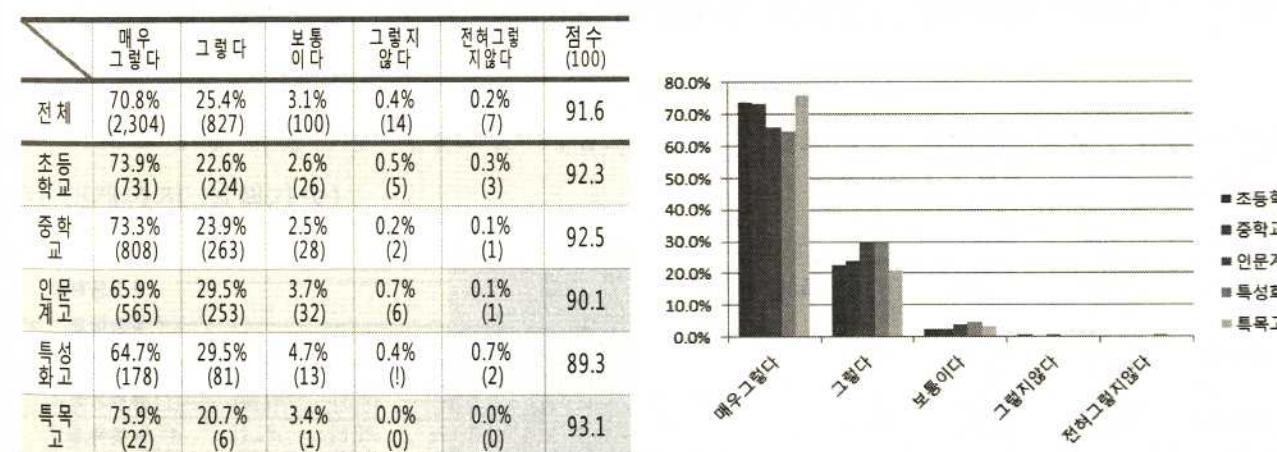
<표 II-77> 징계 이유 고지 여부(교사)



설문 결과에 대한 우측 막대그래프 분포 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교사들은 대부분 별점이나 징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답변하였고,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교사들이 미미한 정도이긴 하나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 6-2) 학교는 징계 절차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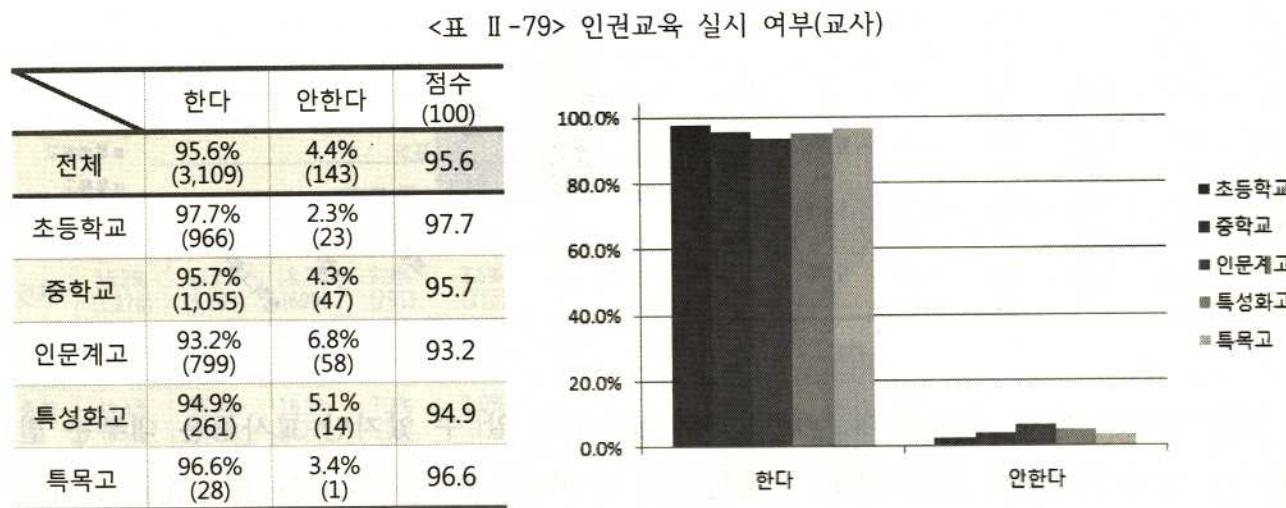
<표 II-78> 징계 시 의견진술권 보장 여부(교사)



징계 절차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위의 별점 등의 이유 설명에 대한 설문에서와 유사한 답변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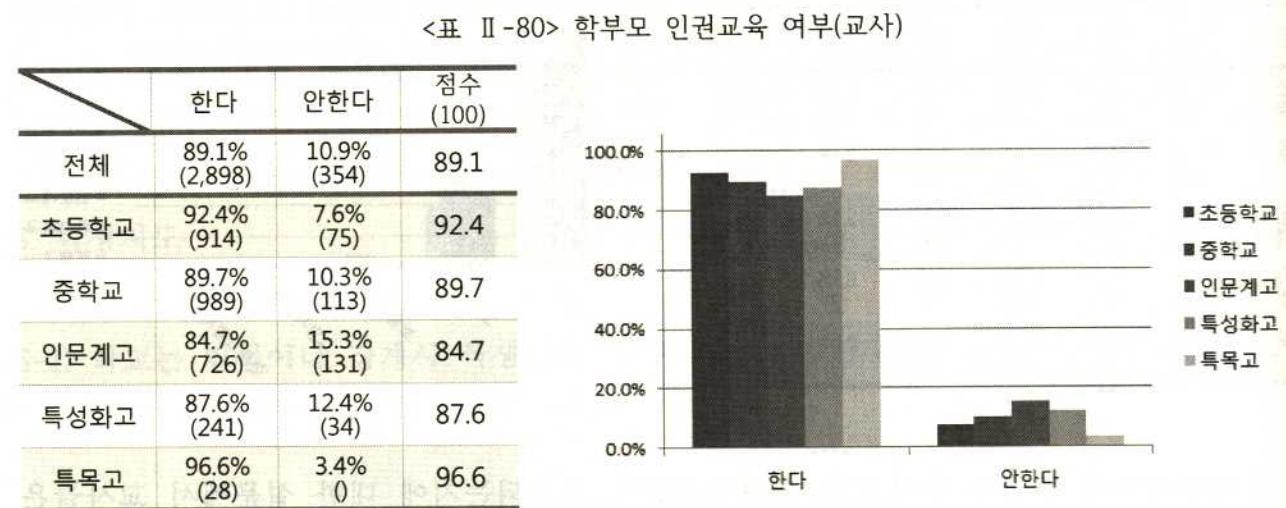
## 7. 인권교육

### 7-1)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학기마다 실시한다.



전체적으로는 95%가 넘는 교사들이 학기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인문계고 교사들의 경우 6.8%의 교사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여 다른 학교군보다 인문계고에서 인권교육 진행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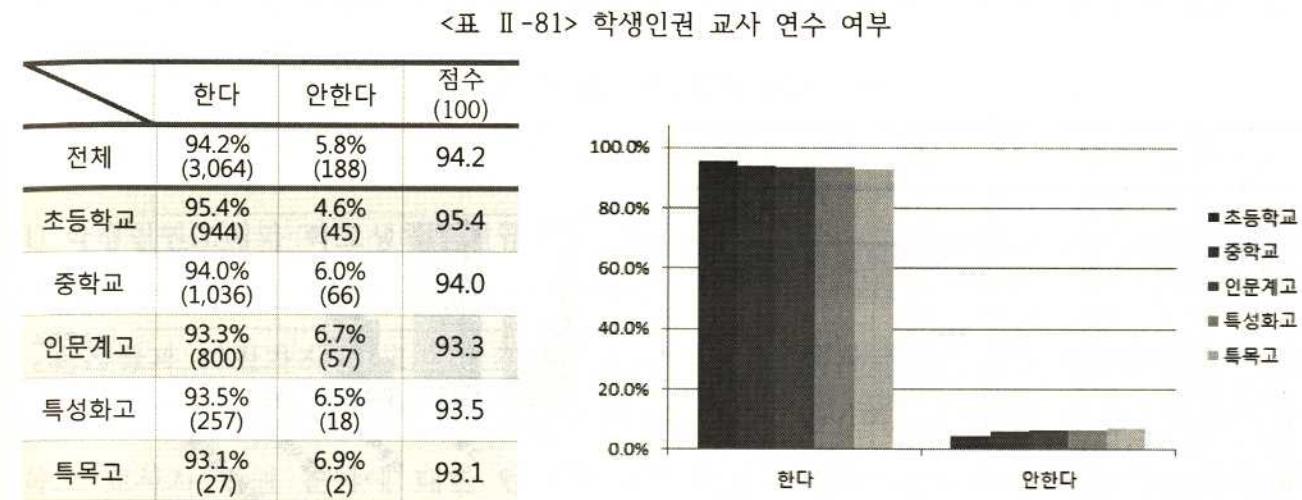
### 7-2) 우리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한다.



전체 교사의 90%에 가까운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의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집단면접조사시 학부모들은 실제로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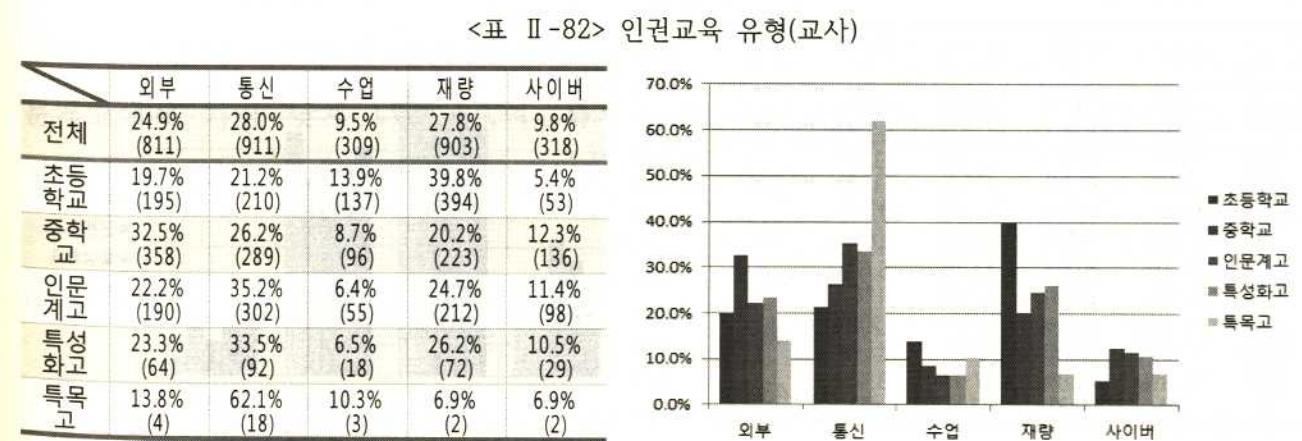
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 7-3) 우리 학교는 학생인권에 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전체 교사의 94.2%가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집단면접 당시 교사들은 담당교사가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 전달받는 형식이라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수의 형태에 대한 정밀한 설문 등을 통해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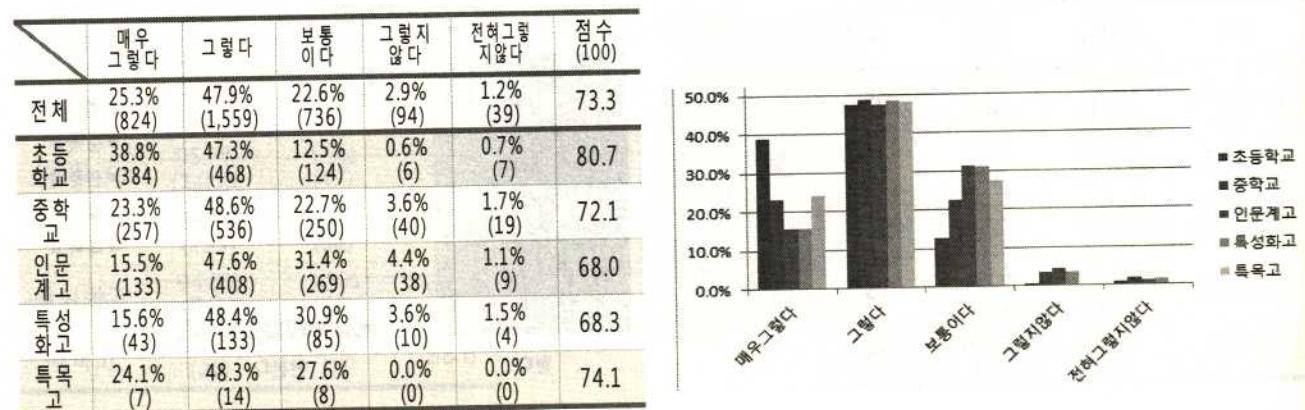
### 7-4)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어떠한 형식으로 실시합니까?(3개까지 선택가능)



인권교육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가정통신문 발송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입시의 하중이 큰 특목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5)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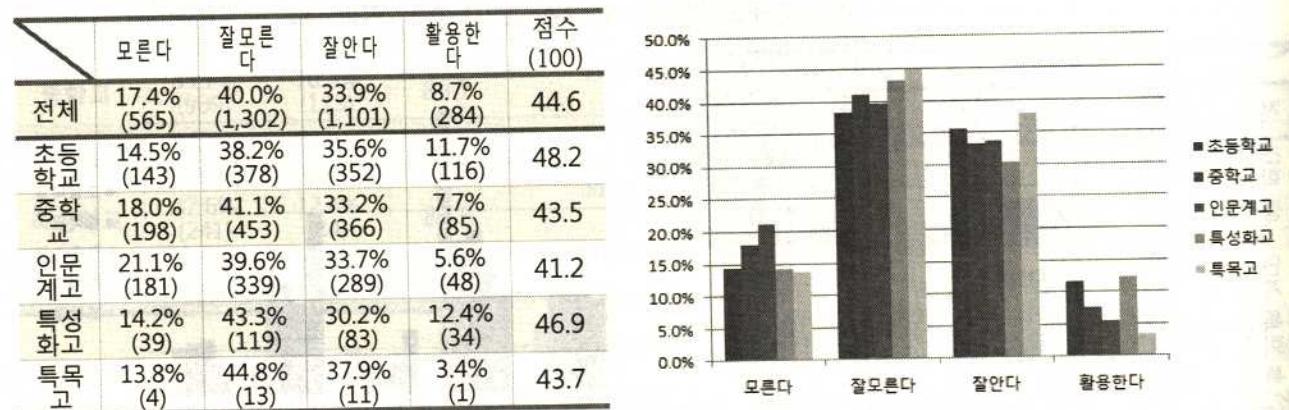
<표 II-83> 인권교육 영향 평가(교사)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인권의식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의 설문에 ‘그렇다’는 교사들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47.9%에 달한다. 반면 ‘보통이다’에 그친 답변도 22.6%로, 25.3%의 ‘매우 그렇다’는 답변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하여 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7-6)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표 II-84> 학생인권옹호관제도 인지 여부(교사)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에 대한 교사 설문 결과를 보면, 막대그래프의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모른다’와 ‘잘 모른다’는 답변이 상당히 많다. ‘잘 알고 있으며 활용한다’는 답변은 비교적 적은 편인데, 특이하게 초등학교와 특성화고의 경우 다른 학교군보다 높게 11.7%와 12.4%의 교사들이 활용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 8. 총평

###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경우에도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반응 패턴이 유사하다. 학교별 교사들의 편차는 적은 편이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와 특목고 교사가 인권 분야에 대한 인식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에 비해 조례 및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다. 이는 2012년 설문조사 결과시 이미 우려했던 바이며, 조례 및 규정을 실효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학교 내부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으로 보인다.

### 2) 학교생활

#### (1) 차별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학생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문계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의 교사들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2) 자유권

교사들은 기타 자유권에 해당하는 항목들도 학교 내에서 상당히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특성화고 교

사들의 경우에는 자유권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의 경우 특히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상당 정도 남아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휴대전화 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학생 복지 등

상담 및 학생 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해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을 감안할 때,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가장 큰 간극이 벌어지는 부분으로 보인다.

### 3) 교사 참여 등과 직무피로도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 및 반영하는지에 대한 것과 교사들의 학교 운영 참여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사와 학교장 사이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인권증진의 한 주체라는 인식은 특성화고, 중학교, 인문계고에서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직무피로도가 ‘특성화고 > 인문계고, 중 > 특목고 > 초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 학교폭력 등

초등학교, 특목고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 간 신체, 언어폭력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계고보다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교사들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교사에 의한 체벌, 언어폭력이 상당수 있다고 답했던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고 답했던 학생들의 설문 결과와 대조적이다.

### 5) 학생자치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서 특목고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특목고 학생의 설문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 전반적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지체되고 있다고 보았는데, 학생 대상 설문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6) 학생지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 별점, 징계 절차에 있어서 학생 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분야가 상당히 낮게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 7) 인권교육 등

교사들은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기나, 교육 형태가 대체로 가정통신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2012년(27%)보다는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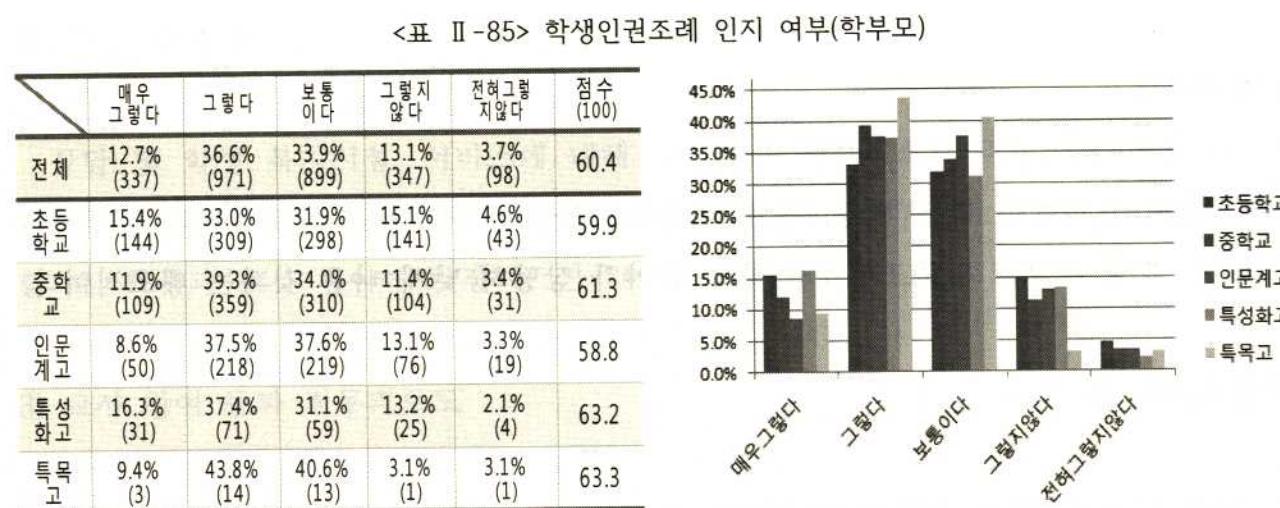
교사들은 또한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8%p 증가한 수치이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았던 학생들의 경우보다 더욱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많은 교사들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4절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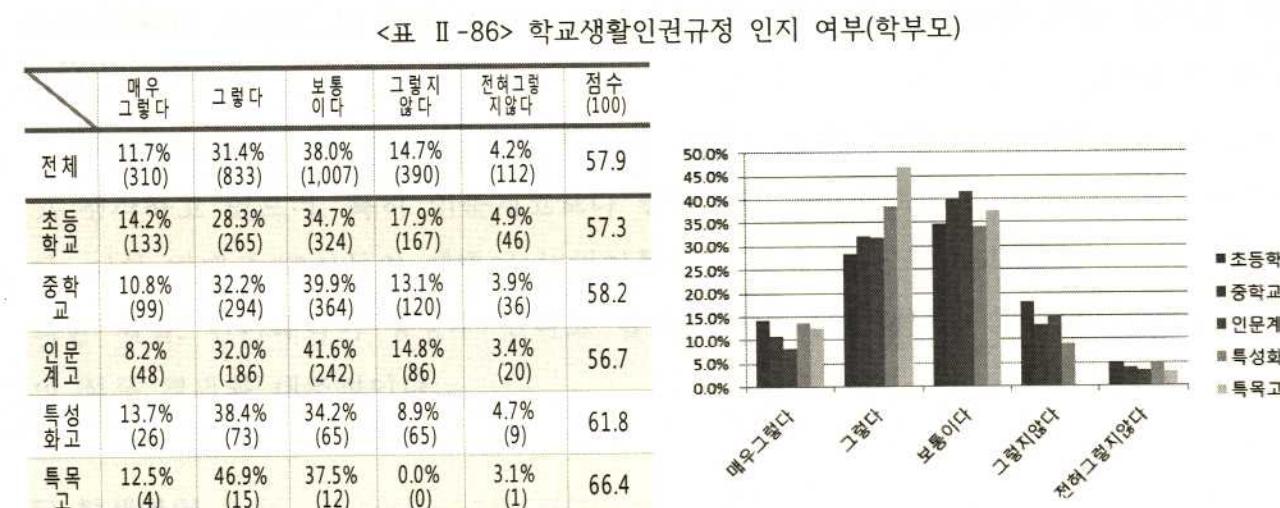
###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 1-1)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한 학부모 설문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다’와 ‘보통이다’의 답변이 가장 많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17%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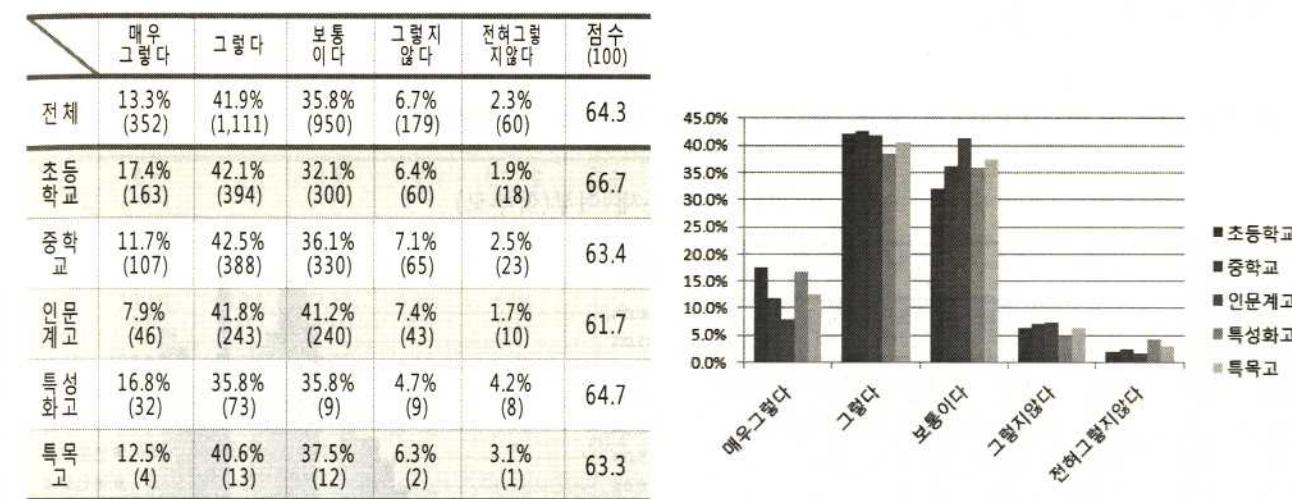
#### 1-2)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알고 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지도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학생, 교사의 경우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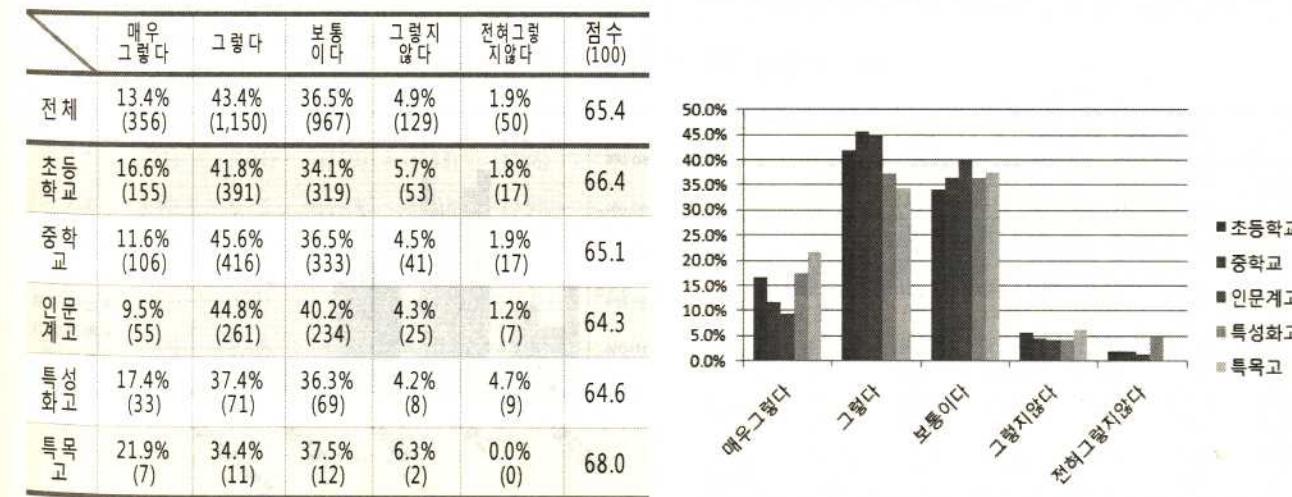
<표 II-87>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부모)



학부모들의 경우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하여도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특성화고보다는 특목고, 중학교, 인문계고 학부모들의 평가가 다소 더 낮은데 특히 인문계고 학부모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7.9%에 그쳤으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9.3%에 이른다.

#### 1-4)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표 II-88>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용 평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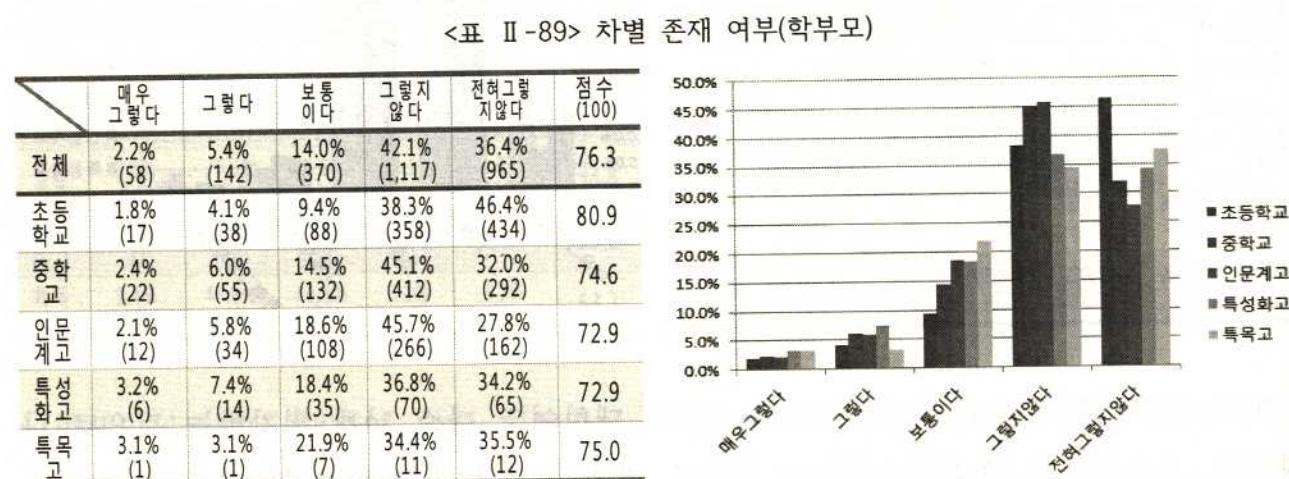


학부모 설문 결과, 학교생활인권규정의 학생인권 보장에 대하여도 조례에서와 비슷한 양상의 답변 분포를 보이고 있다.

## 2.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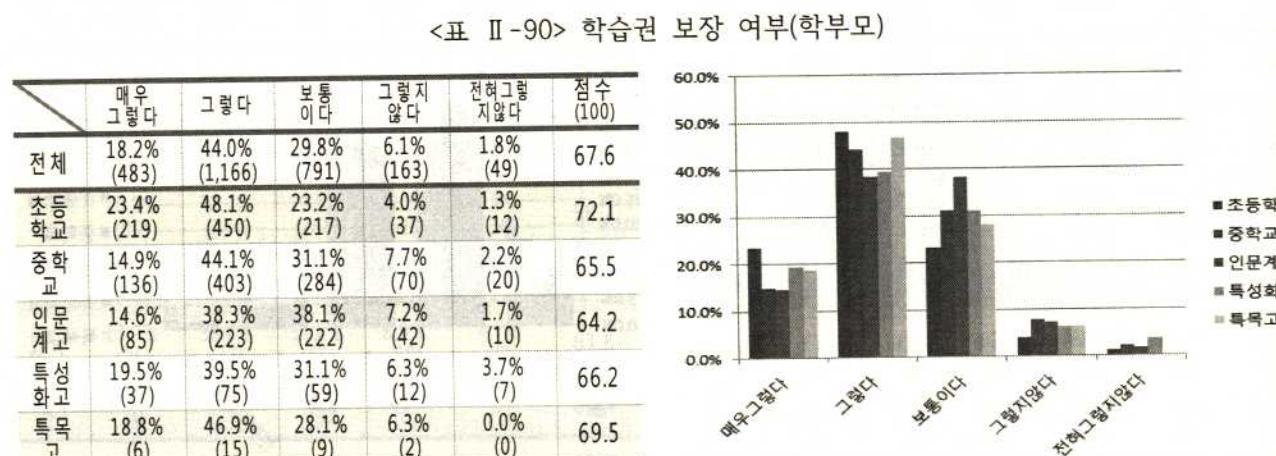
### 1) 차별 및 자유권 등

#### 2-1) 학교가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다.



이 설문에서는 차별이 있다는 의미의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특성화고는 10.6%, 중학교는 8.4%, 인문계고는 7.9%의 학부모가 학교가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다는 답변을 했다.

#### 2-2) 학교는 학습권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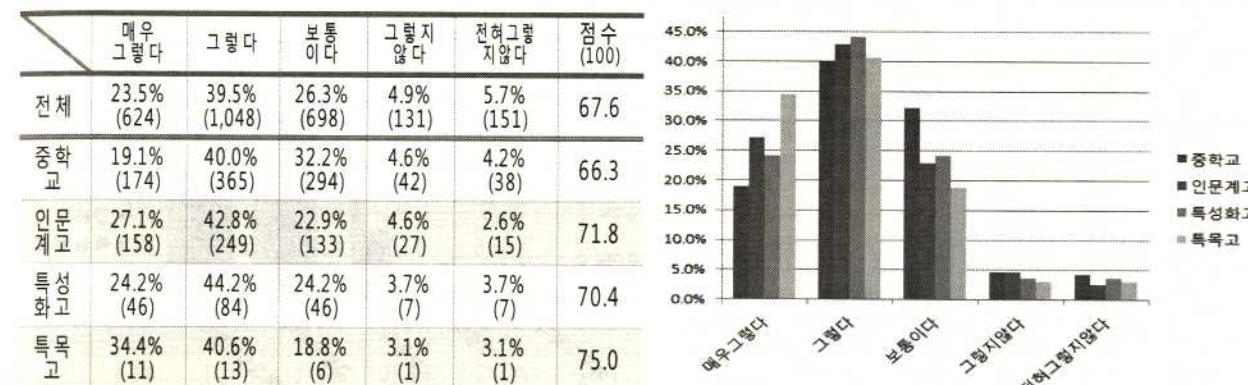


학습권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하여, 특성화고는 10.0%, 중학교는 9.9%, 인문계고는 8.9%의 학부모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답변을 하여 제도 보완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2-3) 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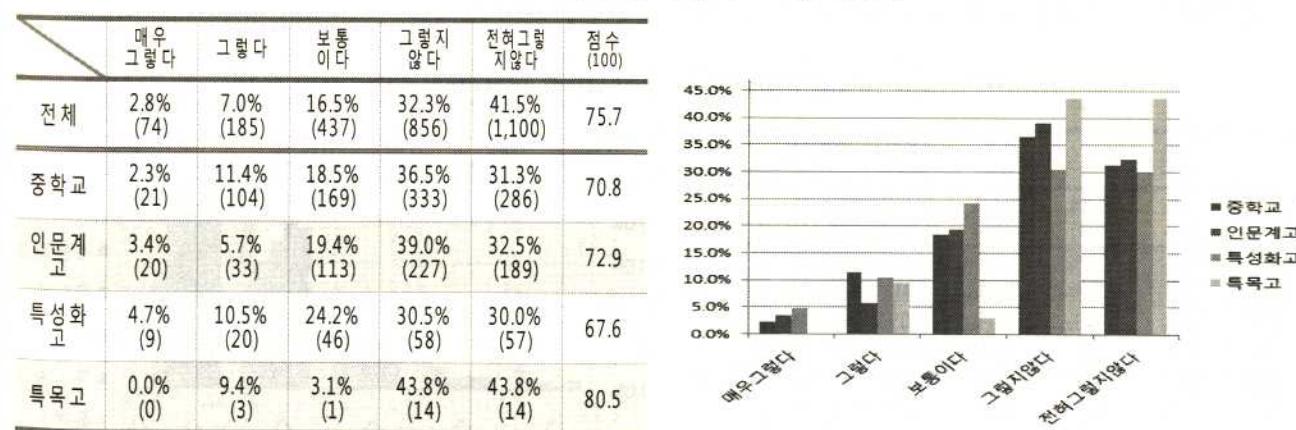
**<표 II-91> 학습 선택권 보장 여부(학부모)**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10.6%의 학부모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고, 특히 중학교 학부모들의 경우 이와 같은 부정적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 2-4) 학교는 두발길이를 규제한다. (※초등학교 학부모는 응답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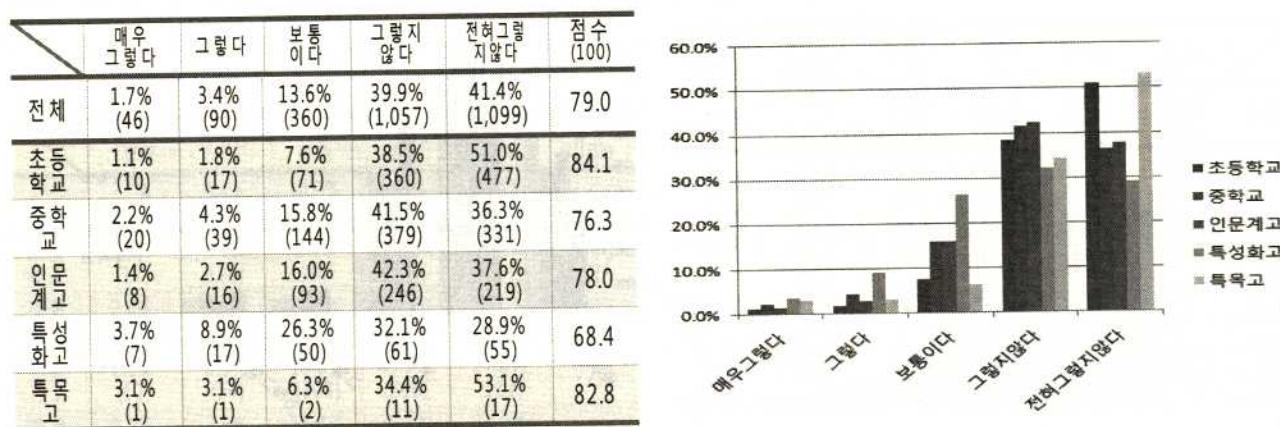
**<표 II-92> 두발길이 규제 여부(학부모)**



두발 길이 단속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부모들의 답변율에 다소 편차가 나타나는데, 특목고 학부모들의 경우 두발 길이에 대한 단속이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인 반면, 특성화고 15.2%, 중학교 13.7%, 인문계고 9.1%의 학부모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다.

2-5)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또는 학급 전체의 소지품 검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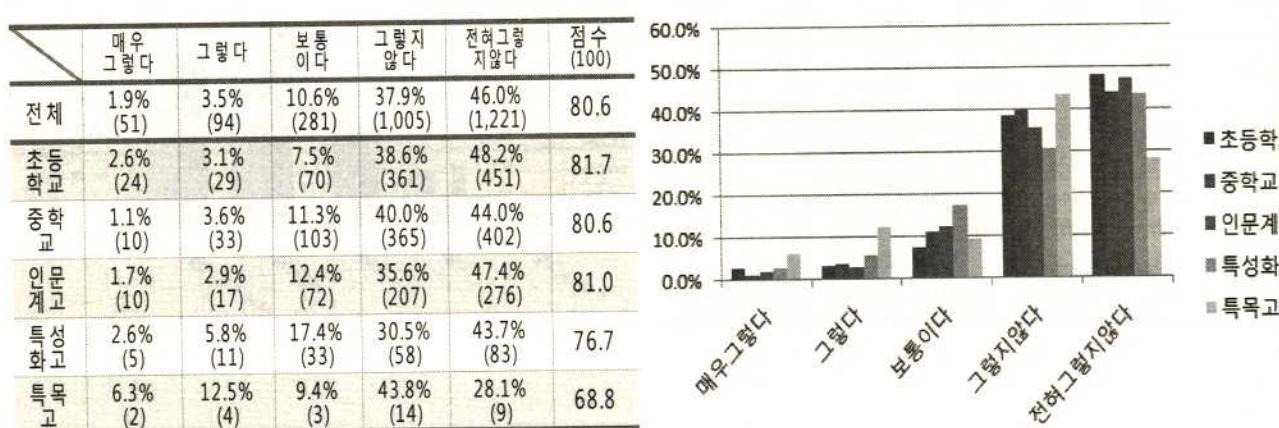
<표 II-93> 소지품 검사 여부(학부모)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학부모 답변의 양상은 위의 두발길이 단속에 대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위 막대그래프 상으로 보면, 초등학교와 특목고의 경우 최우측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에서 눈에 띄게 높은 답변율을 보이며 특성화고의 경우 ‘보통이다’와 ‘그렇다’에서 다른 학교군보다 그래프가 올라와 있다.

2-6) 학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게 한다.

<표 II-94>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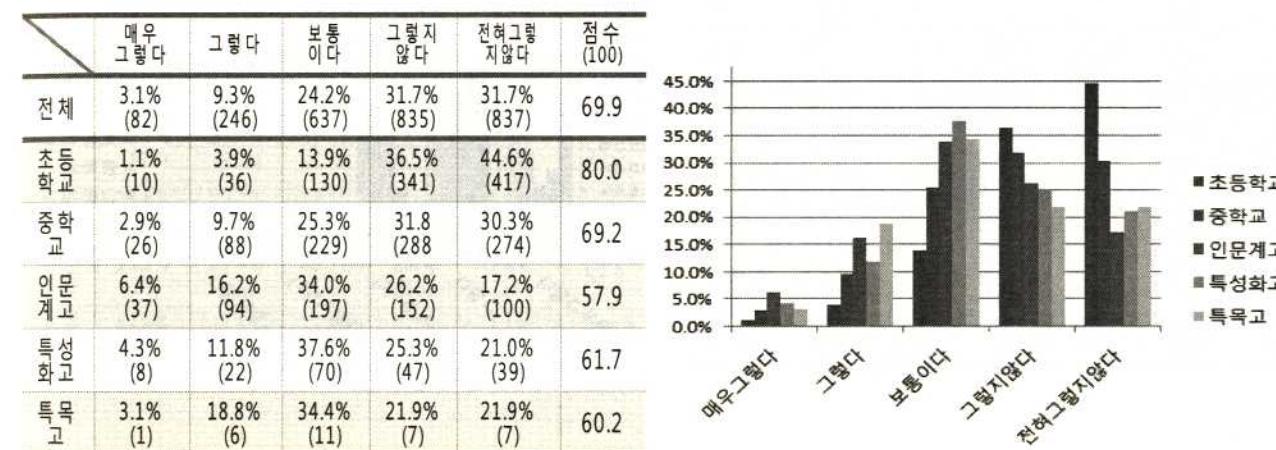


휴대전화 소지 등교 금지 문제에서는 학생, 교사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목고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학부모의 답변이 18.8%나 되는 등 다른 학교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편으로 나타난다.

## 2) 학생 복지 등

2-7) 자녀가 성적 때문에 학교생활을 힘들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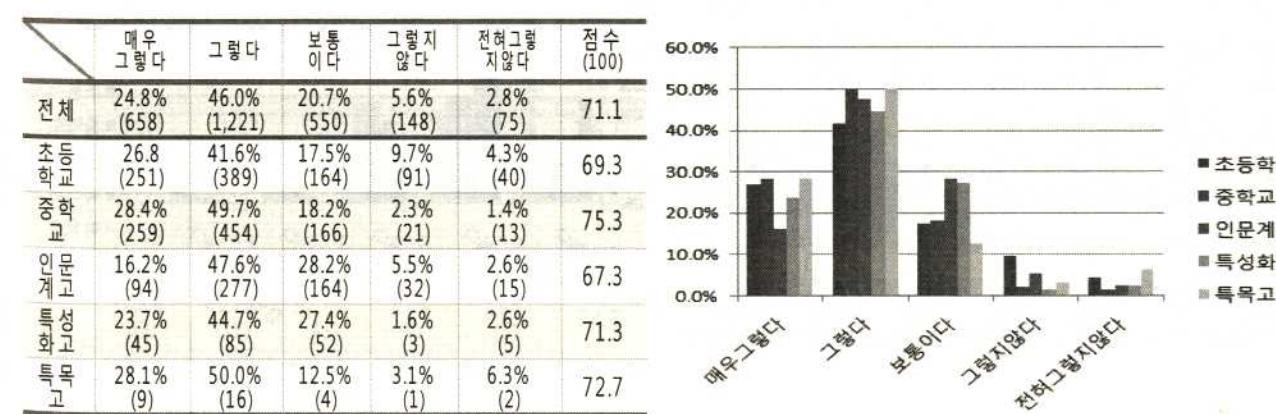
<표 II-95> 학생 성적 부담감(학부모)



자녀들의 성적 부담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인문고계와 특목고 학부모의 경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답변이 각각 20.6%, 21.9%로 높은 편이다.

2-8) 학교에 상담실과 상담 교사가 있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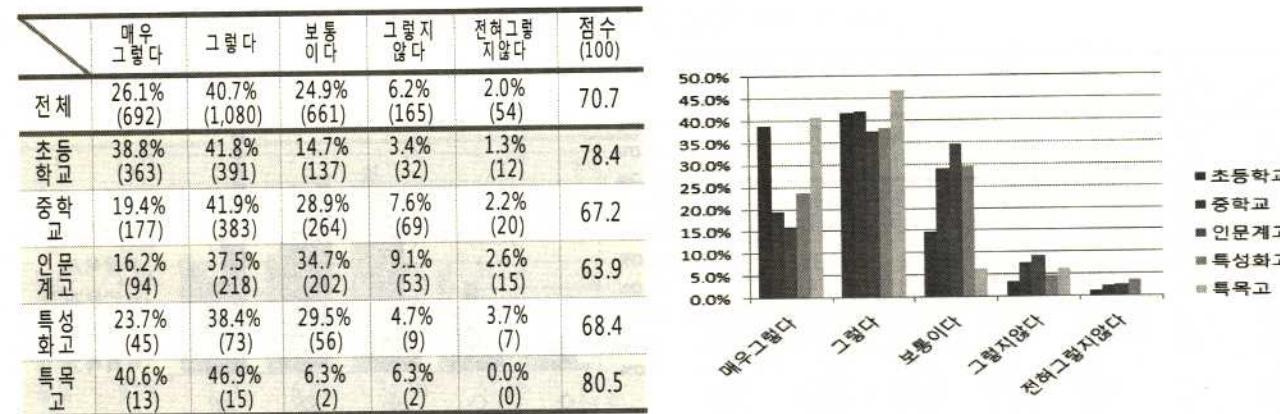
<표 II-96> 상담실 및 상담교사 여부(학부모)



상담교사와의 상담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만 인문계고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상담제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고의 경우 앞의 성적에 대한 부담률을 감안한다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

## 2-9)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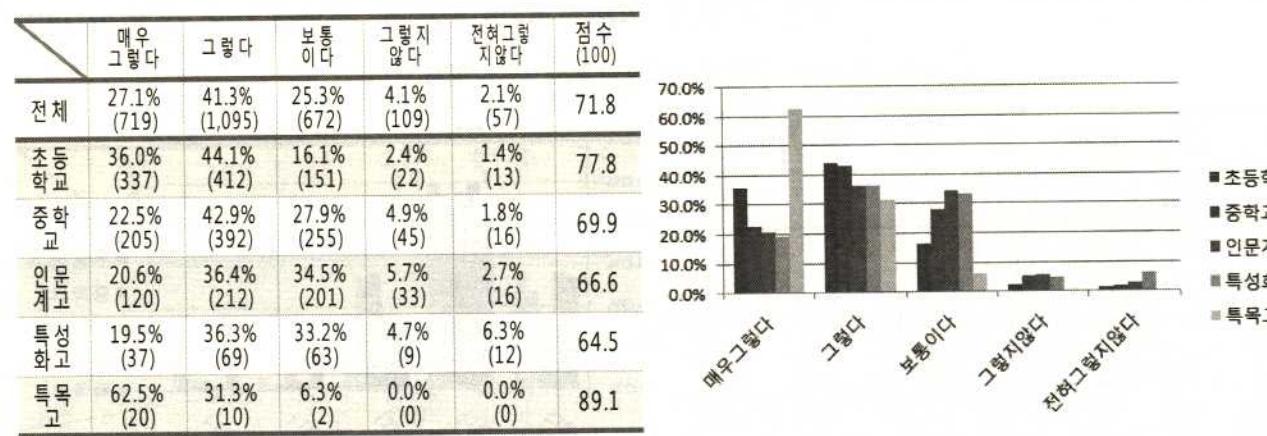
<표 II-97> 방과 후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여부(학부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에서 인문계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군의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2-10) 학교 급식은 위생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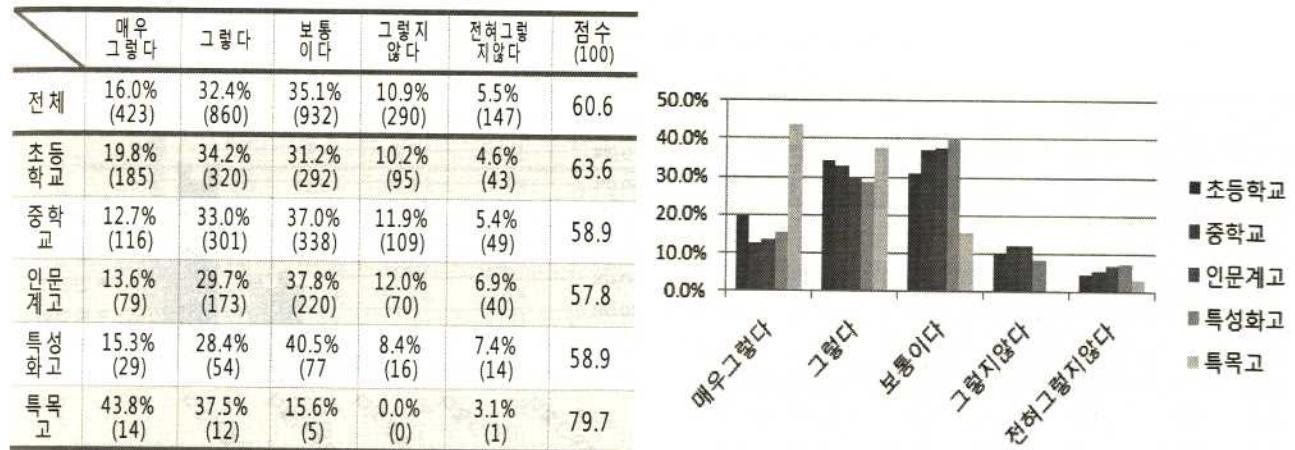
<표 II-98> 급식 위생 여부(학부모)



학교 급식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 특목고 학부모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성화고, 인문계고, 중학교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1) 학교는 급식 개선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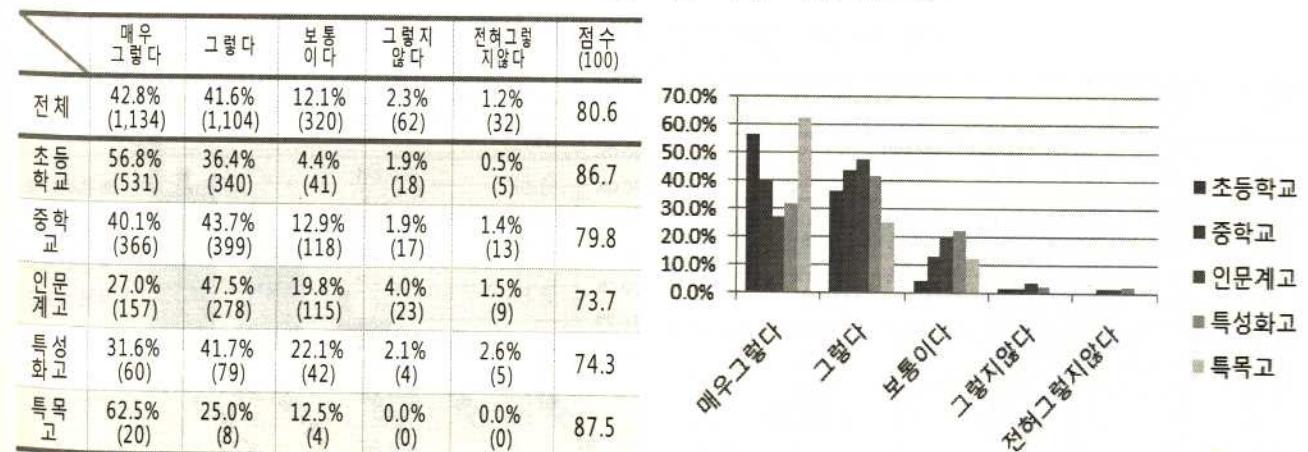
<표 II-99> 급식 개선 시 학생 의견 반영 여부(학부모)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 설문에서 학부모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의 평가를 내었는데, 평점 상으로 보면 특목고와 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의 학부모들 간 평가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12) 학교에서 학생이 아플 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

<표 II-100> 보건실 이용 가능 여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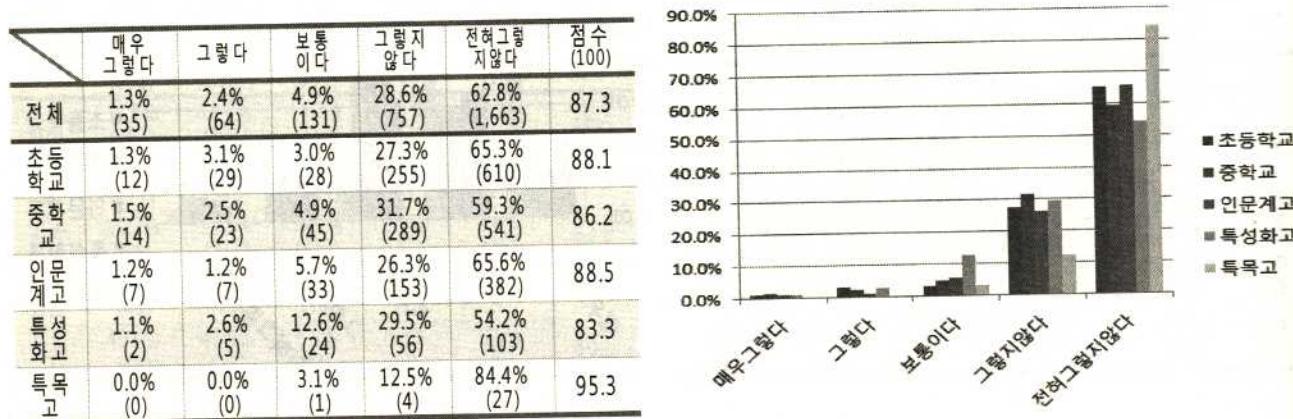


보건실 이용에 대한 학부모 설문 결과를 보면, 특성화고와 인문계고 학부모들에서 적은 비율이긴 하나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존재한다. 향후 심층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3. 학교폭력 등

3-1) 최근 1년간 귀하의 자녀가 다른 학생(선후배 포함)에게 맞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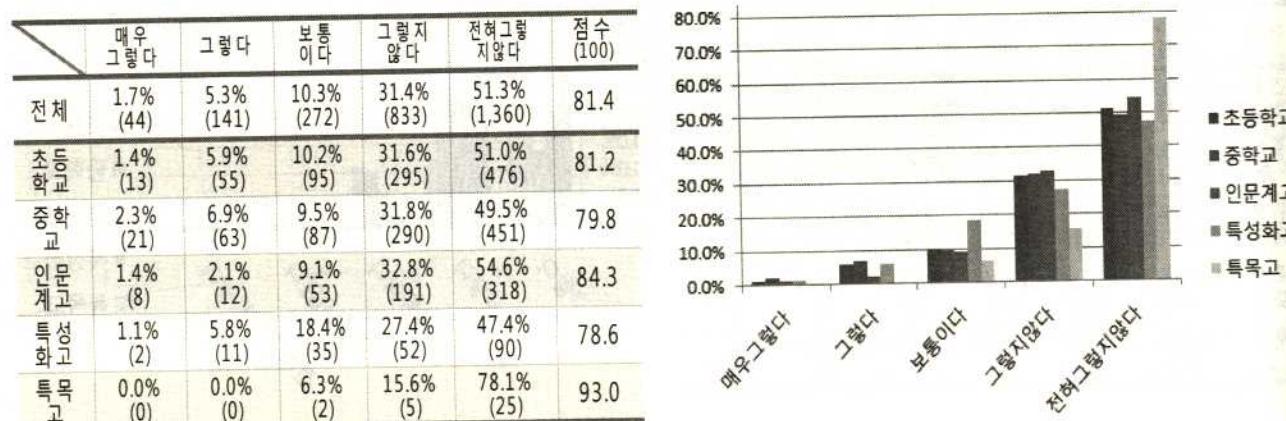
<표 II-101>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여부(학부모)



학부모 설문 결과를 보면, 특목고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 내 학생간 폭력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학교군의 학부모들은 아주 적은 비중이긴 하나 학생간 폭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3-2) 최근 1년간 귀하의 자녀가 다른 학생(선후배 포함)에게 언어폭력(심한 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당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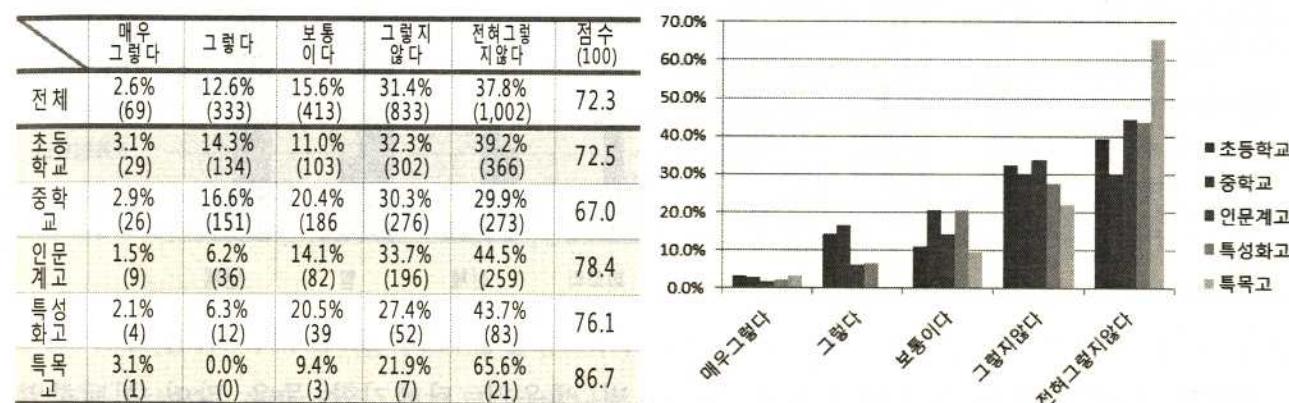
<표 II-102> 언어폭력 피해 경험 여부(학부모)



학생 간 언어폭력의 문제에 대한 학부모 설문 결과도 위의 학생 간 물리적 폭력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목고의 학부모들은 학생간 언어폭력이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특성화고의 학부모들은 10% 미만의 선에서 언어폭력이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3-3) 최근 1년간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선후배 포함)간 폭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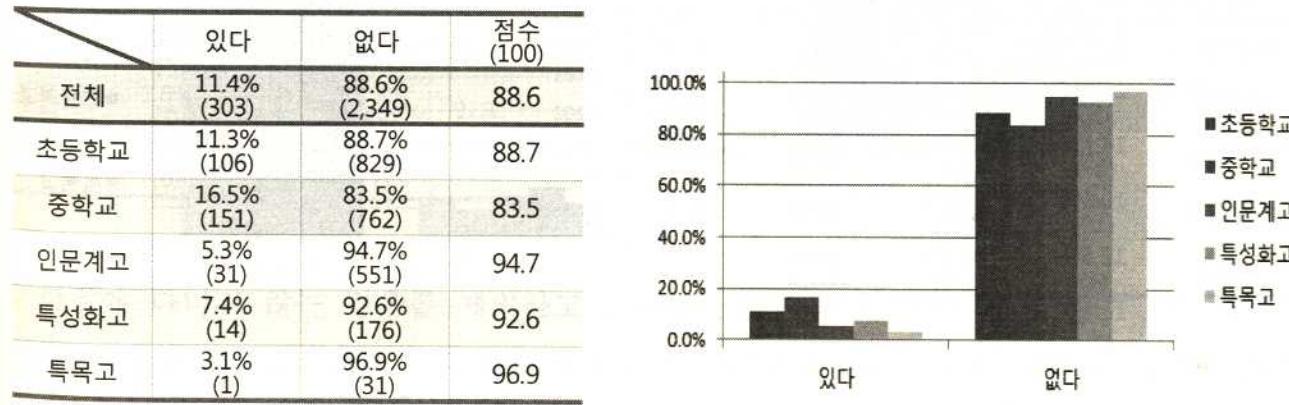
<표 II-103> 학교폭력 존재 여부(학부모)



학생 간 폭력에 대한 경험형 설문 결과와 달리 목격형 설문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목격을 응답한 학부모의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17.4%의 학부모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였는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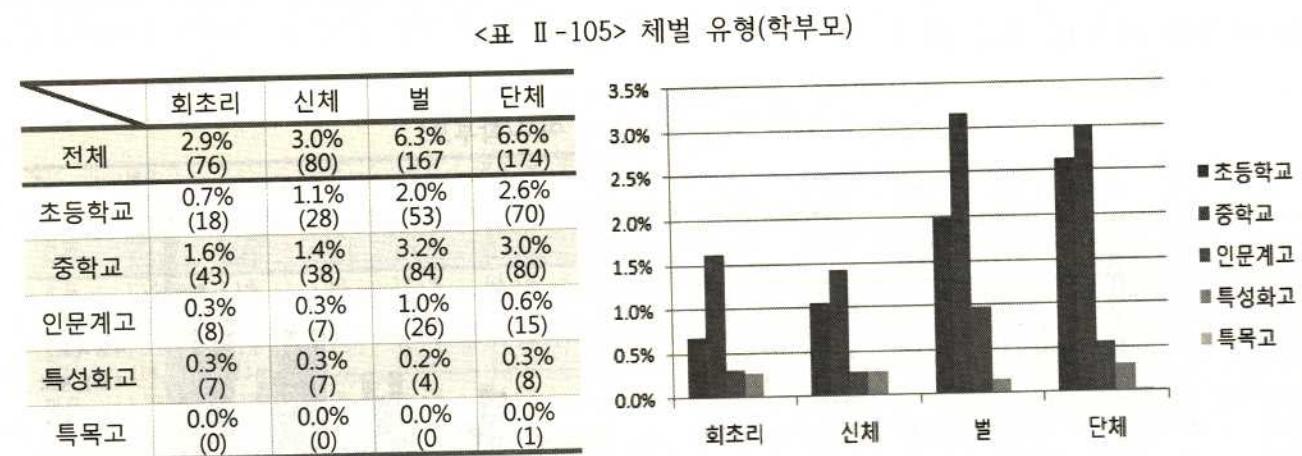
3-4)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체벌이 있습니까?(중복 답변 가능)

<표 II-104> 체벌 존재 여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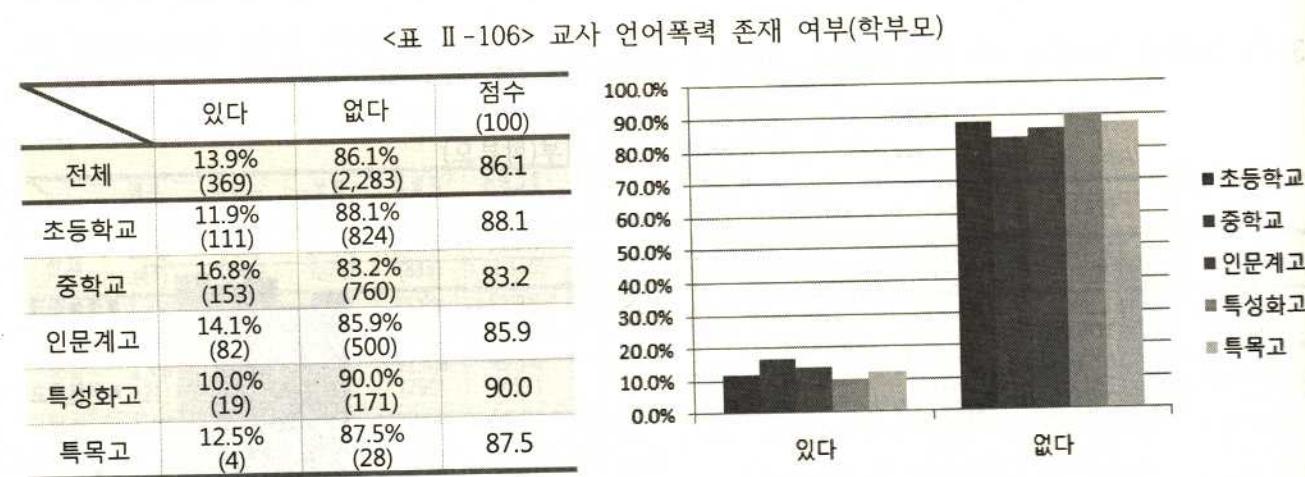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부모들의 16.5%가 학교에서 체벌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특이하게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에도 체벌이 존재한다는 답변이 11.3%에 이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체벌이 있다는 답변이 적은 편이다.

#### 3-4-1) 있다면, 체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중복 답변 가능)



체벌의 형태에 대한 설문에서 학부모들은 벌 세우기, 단체기합 등을 많이 선택하였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회초리와 신체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는 답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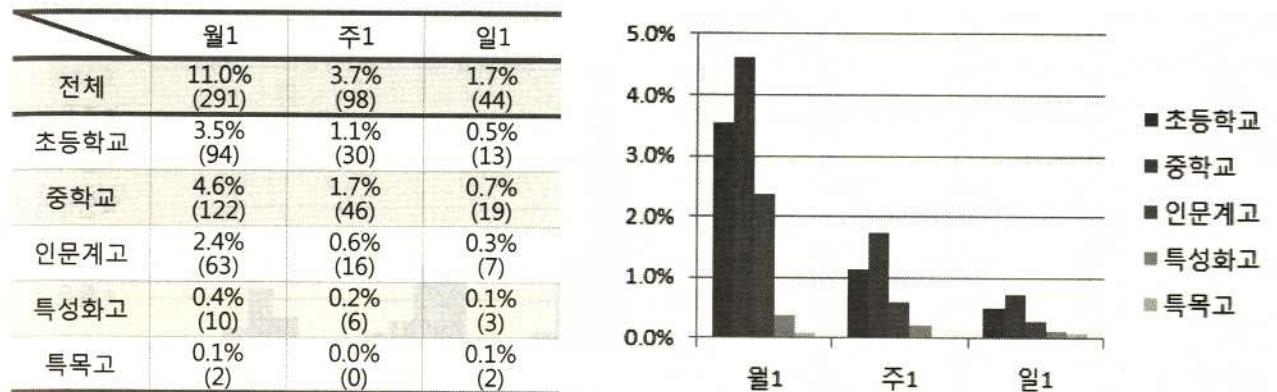
#### 3-5)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언어 폭력(심한 욕설, 비하적 표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사의 언어 폭력에 대한 설문 결과도 교사의 체벌에 대한 학부모 설문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3-5-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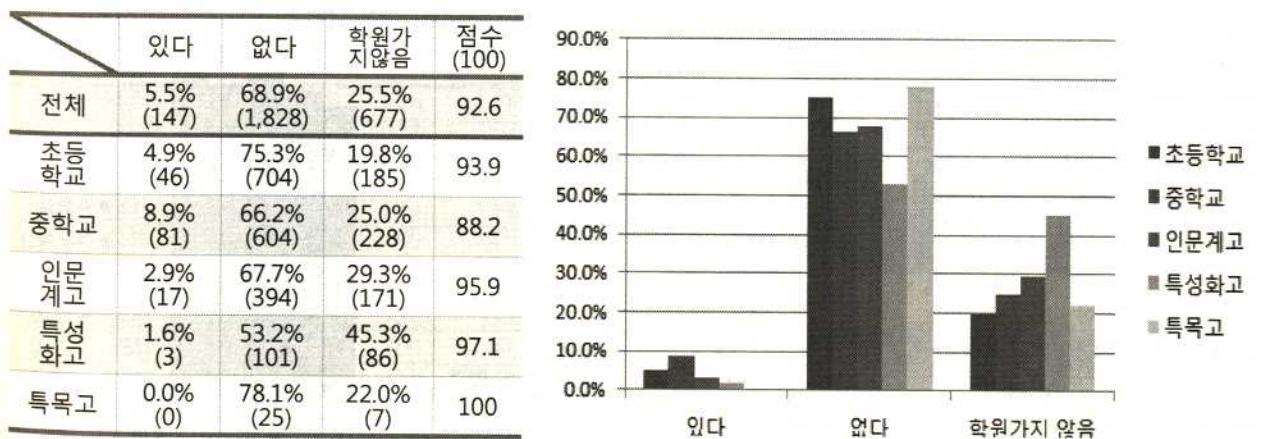
<표 II-107> 교사 언어폭력 빈도(학부모)



교사의 언어 폭력이 있다고 답변한 학부모의 경우에도 그 빈도에 대하여 월 1회 정도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6)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강사가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표 II-108> 학원강사 폭력 존재 여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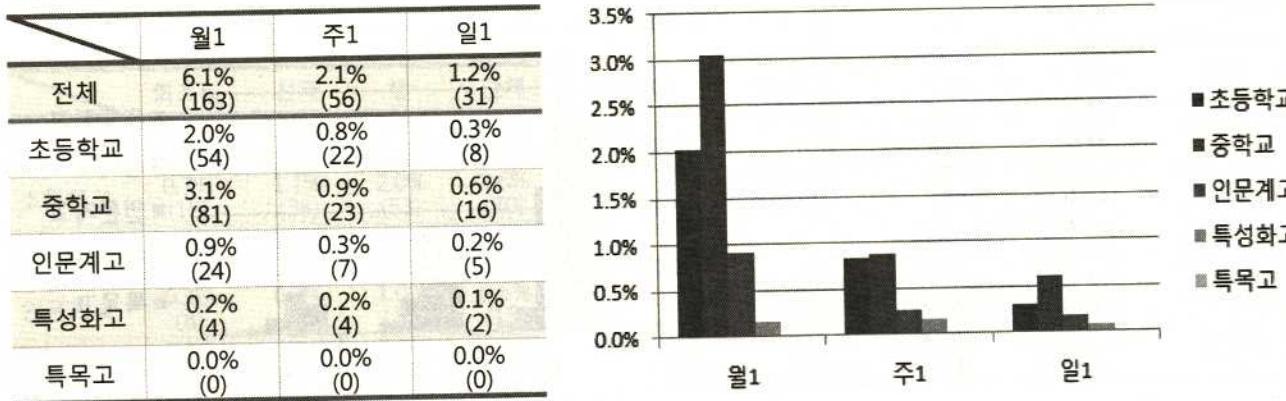


학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다면, 학원에서의 체벌 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면접조사시 학부모의 동의 아래 체벌이 행해진다는

내용이 자주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3-6-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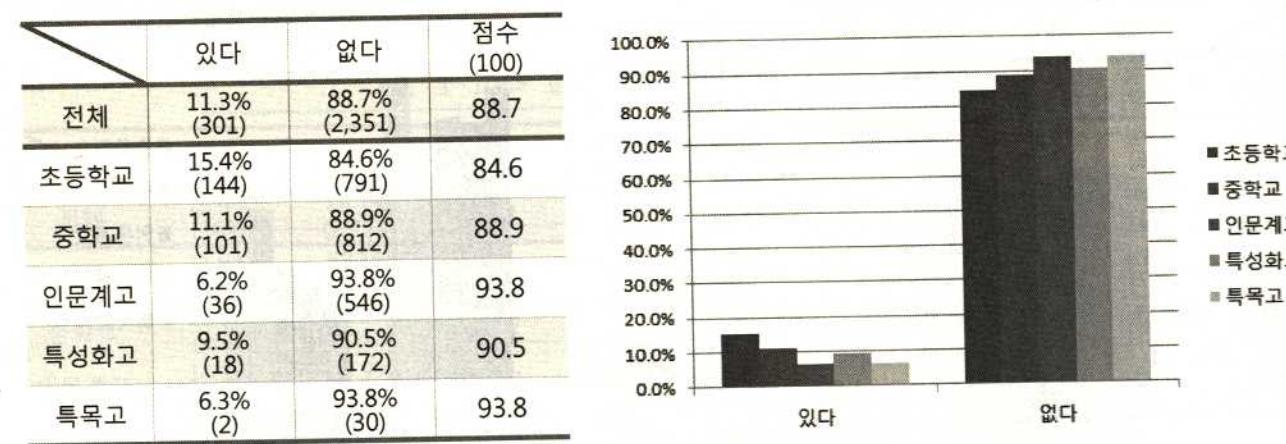
<표 II-109> 학원강사 폭력 빈도(학부모)



학원 강사의 체벌 등의 빈도에 대하여는 월 1회 정도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았다.

### 3-7) 귀하나 다른 가족이 자녀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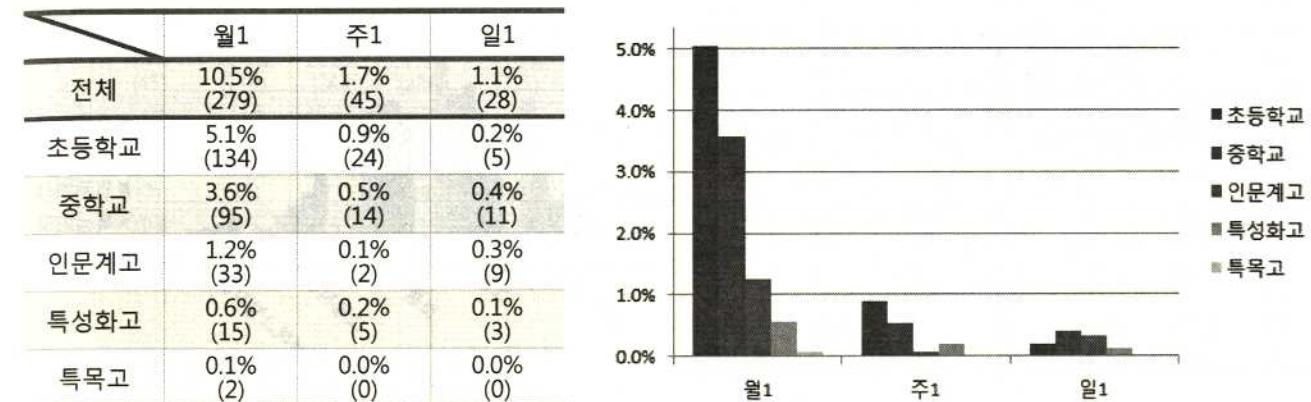
<표 II-110> 가정폭력 존재 여부(학부모)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특목고, 인문계고, 특성화고, 중학교, 초등 학교의 학부모의 순으로 폭력이 존재한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7-1)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합니까?

<표 II-111> 가정폭력 빈도(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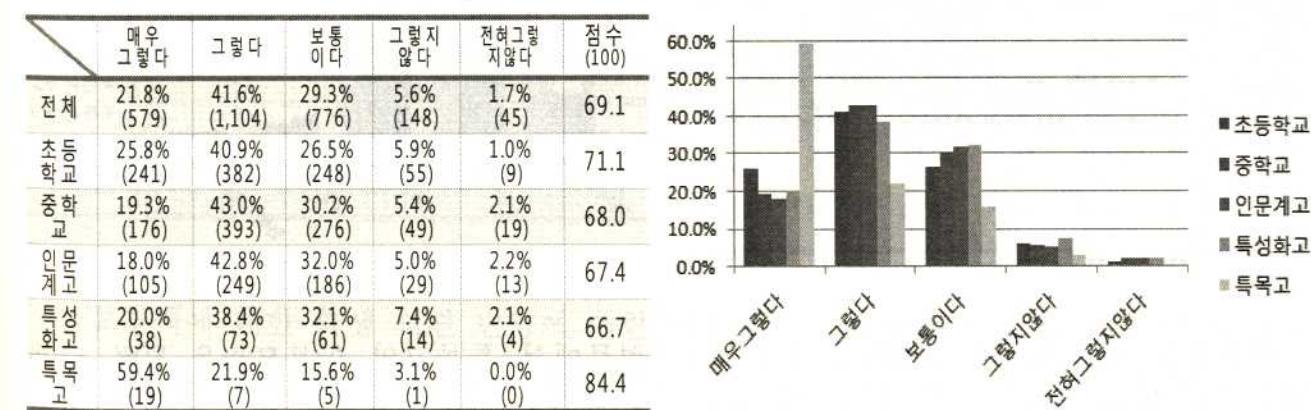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 빈도에 대하여는 월 1회라는 학부모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생자치

### 4-1) 학교와 선생님은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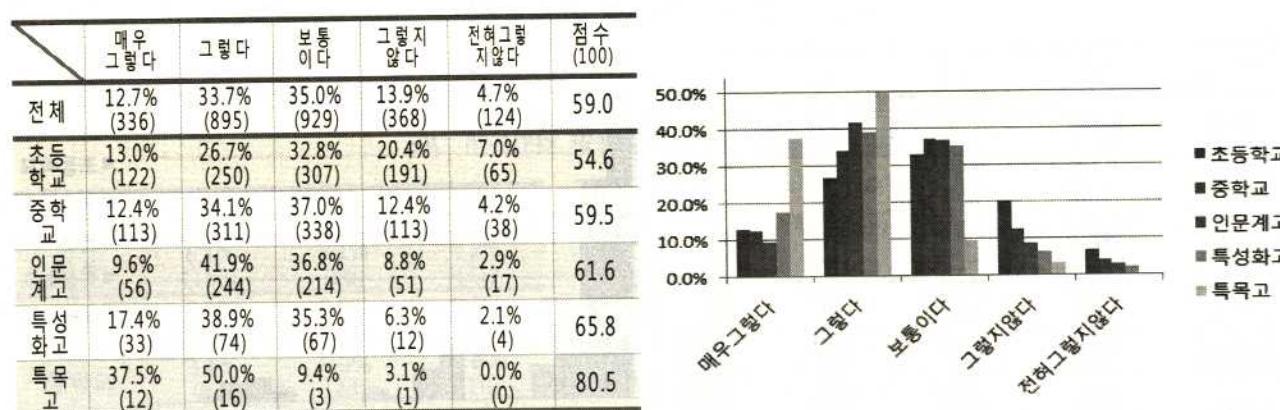
<표 II-112> 학생 자치활동 장려 여부(학부모)



학교 측의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장려에 대한 설문에서 특목고 학부모의 경우 80% 넘게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는 답변을 한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 4-2) 학생회 공간이 별도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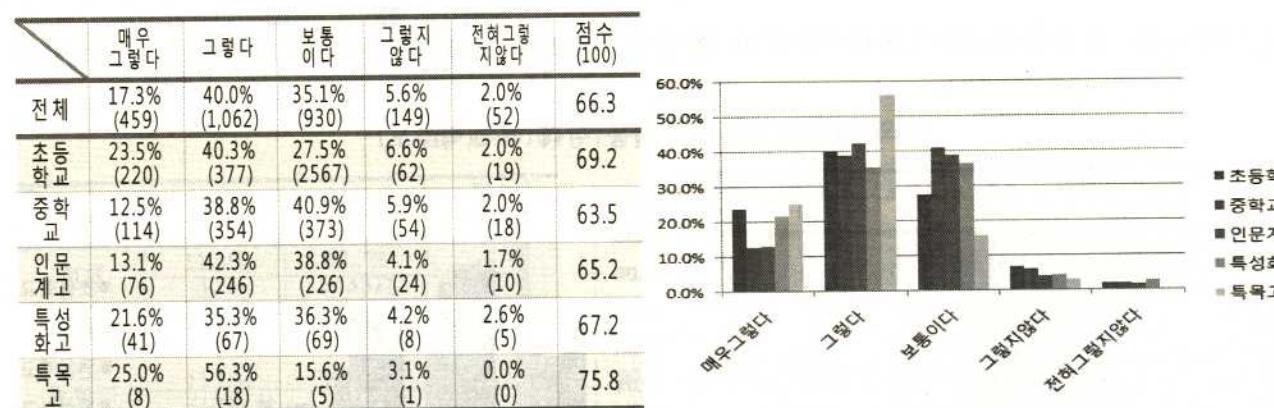
<표 II-113> 학생회 공간 여부(학부모)



학생회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도 특목고의 학부모들이 다른 학교군의 학부모보다 상당히 큰 폭의 차이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 4-3)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표 II-114> 정기 학생회 여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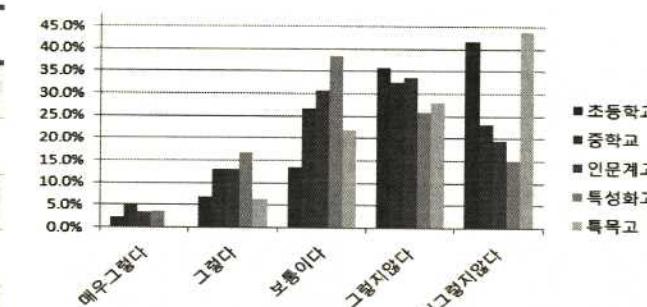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특목고의 학부모들은 80% 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중학교와 인문계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55% 안팎의 학부모들만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다.

#### 4-4) 학급대표나 학생대표로 출마할 경우 자격 제한 조건(성적, 출석 등)이 있다.

<표 II-115> 학생 대표 자격제한 여부(학부모)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100)
전체	3.5% (94)	10.9% (290)	23.7% (628)	33.3% (883)	28.5% (757)	68.1
초등학교	2.4% (22)	6.7% (63)	13.5% (126)	35.7% (334)	41.7% (390)	76.9
중학교	4.9% (45)	12.9% (118)	26.6% (243)	32.4% (296)	23.1% (211)	64.0
인문계고	3.4% (20)	12.9% (75)	30.8% (179)	33.5% (195)	33.5% (113)	63.1
특성화고	3.7% (7)	16.8% (32)	38.4% (73)	25.8% (49)	15.3% (29)	58.0
특목고	0.0% (0)	6.3% (2)	21.9% (7)	28.1% (9)	43.8% (14)	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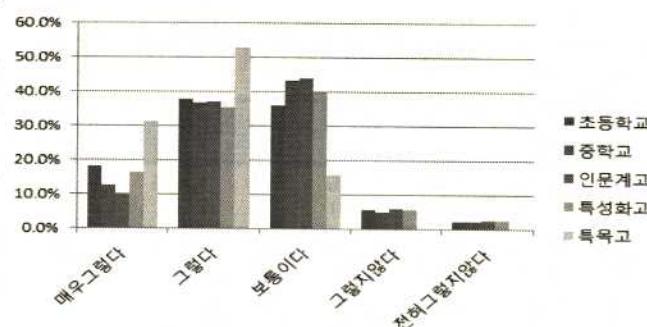


학생 대표 출마 자격제한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특성화고 학부모들이 20% 넘게 그러한 자격제한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특목고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자격제한이 있다는 답변이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 4-5)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정책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116> 학생회 의견 반영 여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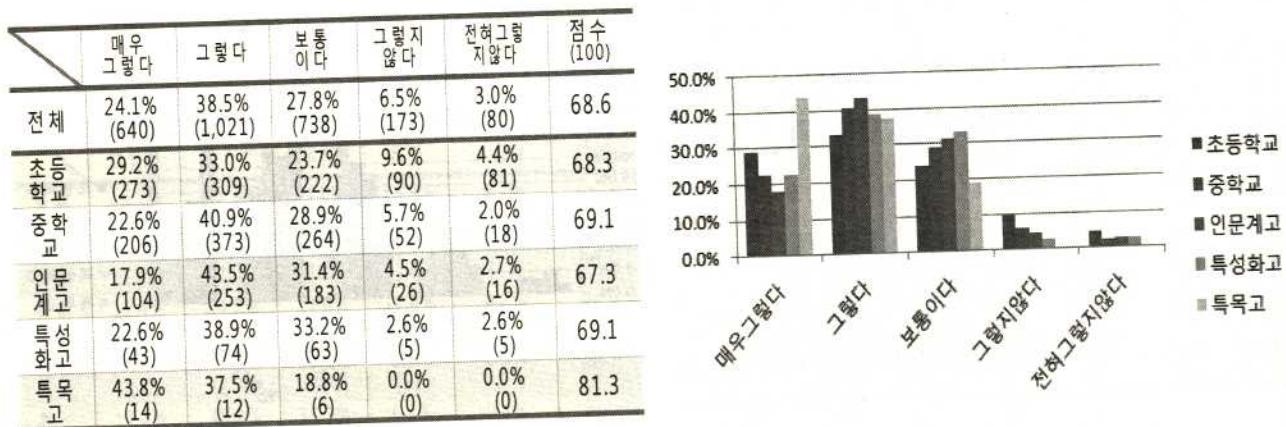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100)
전체	14.4% (382)	37.3% (990)	40.5% (1,074)	5.5% (145)	2.3% (61)	64.0
초등학교	18.1% (169)	37.9% (354)	36.3% (339)	5.7% (53)	2.1% (20)	66.0
중학교	12.5% (114)	36.8% (336)	43.5% (397)	4.9% (45)	2.3% (21)	63.1
인문계고	10.0% (58)	37.1% (216)	44.2% (257)	6.2% (36)	2.6% (15)	61.4
특성화고	16.3% (31)	35.3% (67)	40.0% (76)	5.8% (11)	2.6% (5)	64.2
특목고	31.3% (10)	53.1% (17)	15.6% (5)	0.0% (0)	0.0% (0)	78.9



학교정책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에 대한 설문에서도 특목고 학부모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인문계고와 중학교 학부모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적었다.

#### 4-6) 학교는 학생회가 주관하고 기획하는 행사(운동회, 축제, 수학여행 등)를 실시한다.

<표 II-117> 학생회 주관 행사 여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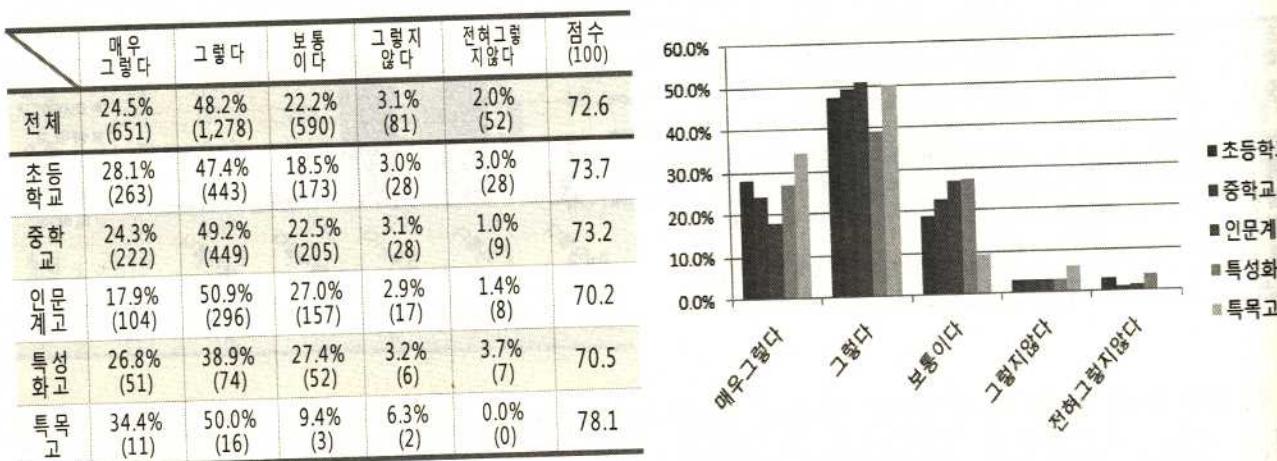


학생회 주관 및 기획의 행사에 대한 설문에서도 특목고 학부모들이 눈에 띄게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많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인문계고 학부모들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 5. 학생지도

5-1) 별점이나 징계를 받을 경우, 학교나 선생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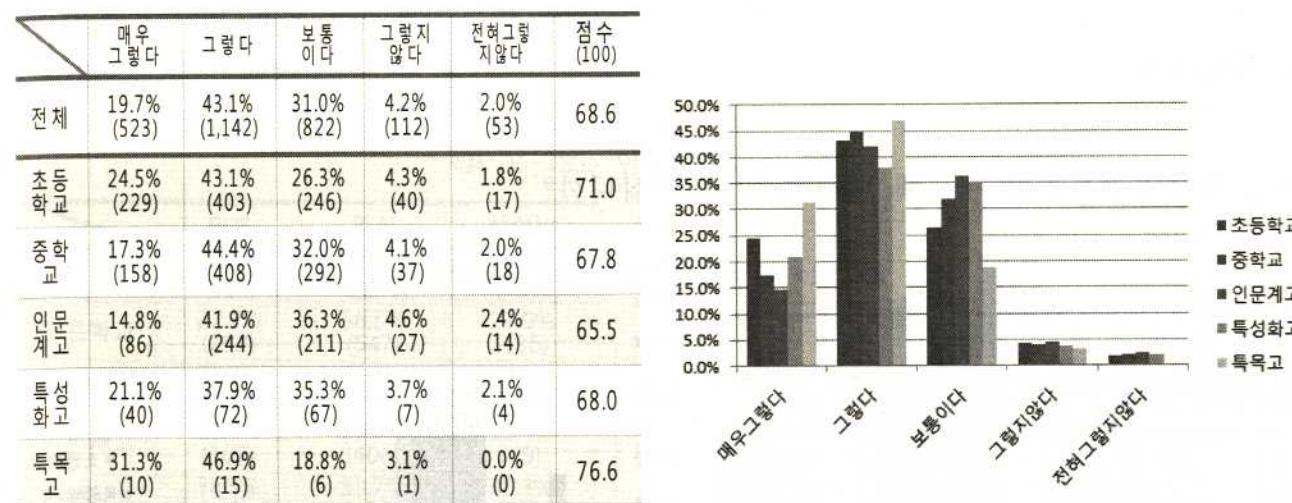
<표 II-118> 징계 이유 고지 여부(학부모)



이 설문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문제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학교와 인문계고는 4%대를 나머지 학교군에서는 6%대의 답변율을 보이고 있다.

5-2) 학교는 징계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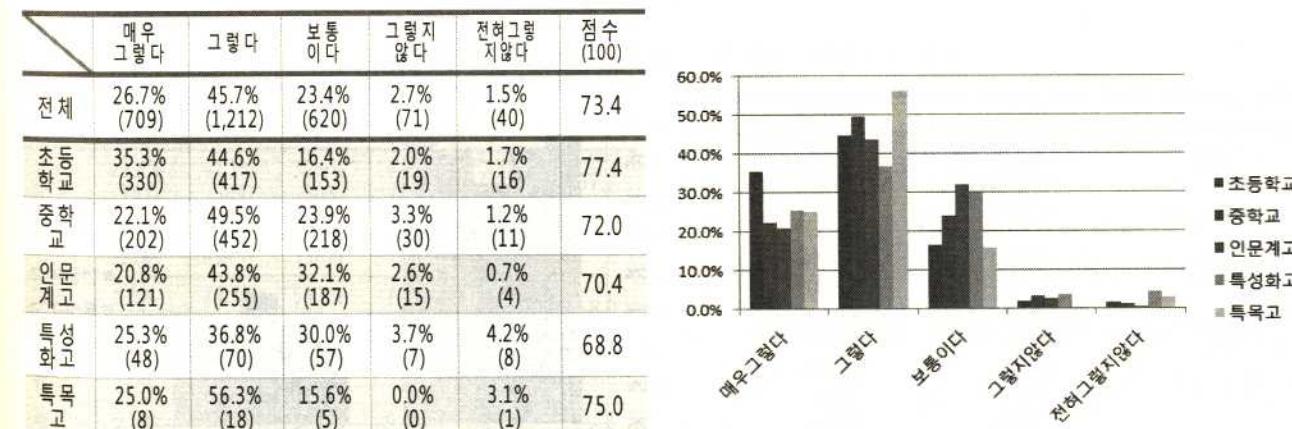
<표 II-119> 징계 시 의견진술권 보장 여부(학부모)



징계 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보장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학부모들은 위의 이유 설명에 대한 설문에서보다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였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향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5-3) 학교나 선생님이 소수 학생(장애, 다문화, 빈곤, 한부모, 조부모 운동선수 등)의 권리 보장을 보장하고 있다.

<표 II-120> 소수 학생 권리 보장 여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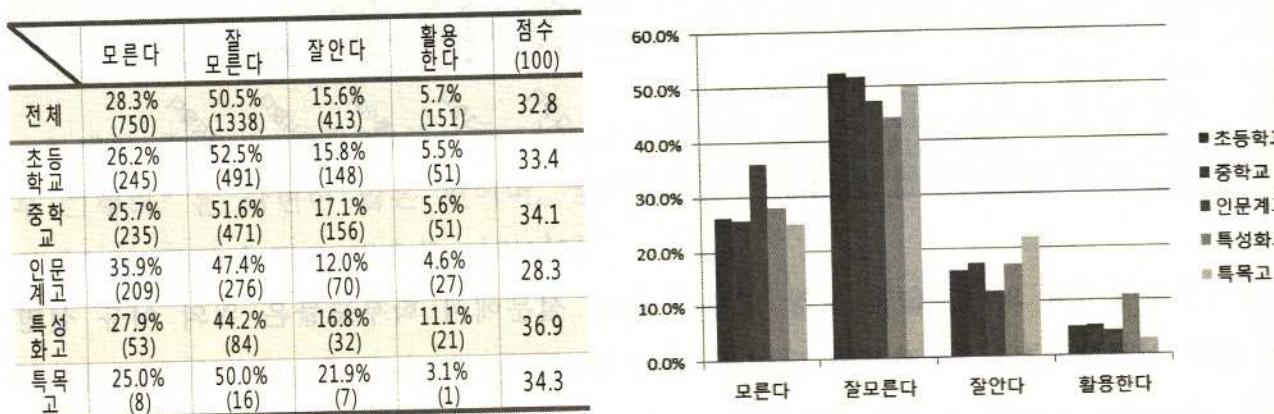
이 설문에서는 특성화고 학부모들의 답변에서 부정적 답변이 다른 학교군보다 높다.

는 특징이 나타나며, 초등학교와 특목고 학부모의 답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 6. 인권교육

### 6-1)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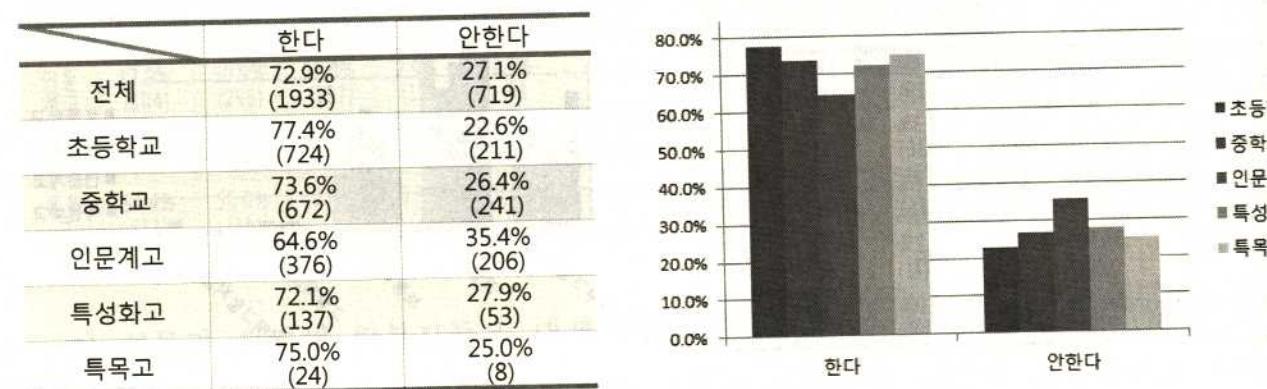
<표 II-121> 학생인권옹호관 인지 여부(학부모)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매우 낮았으며, 특히 인문계고 학부모들에게 그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 6-2)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실시한다.

<표 II-122> 보호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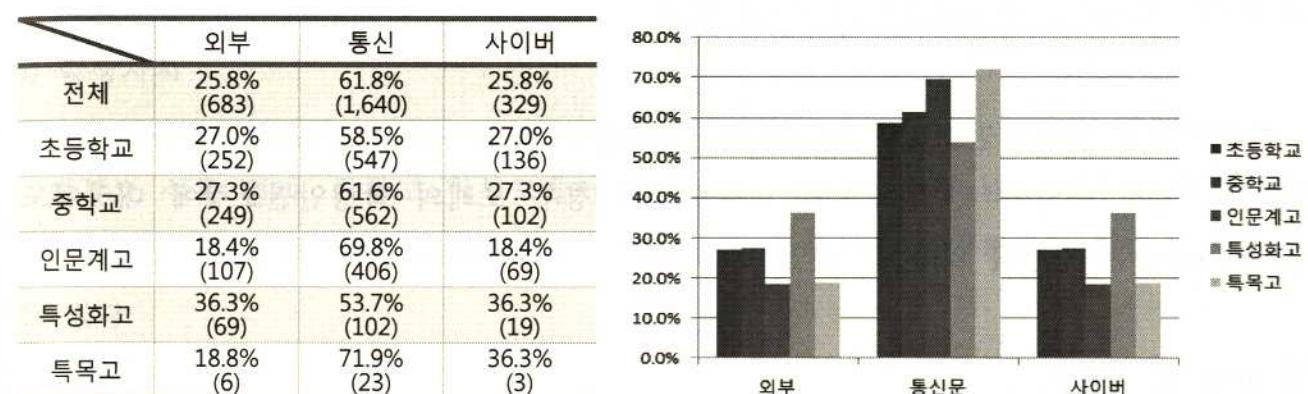


학부모 대상의 인권교육 등의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인문계고의 경우 가장 조례

이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6-3)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어떠한 형식으로 실시합니까?(3개까지 선택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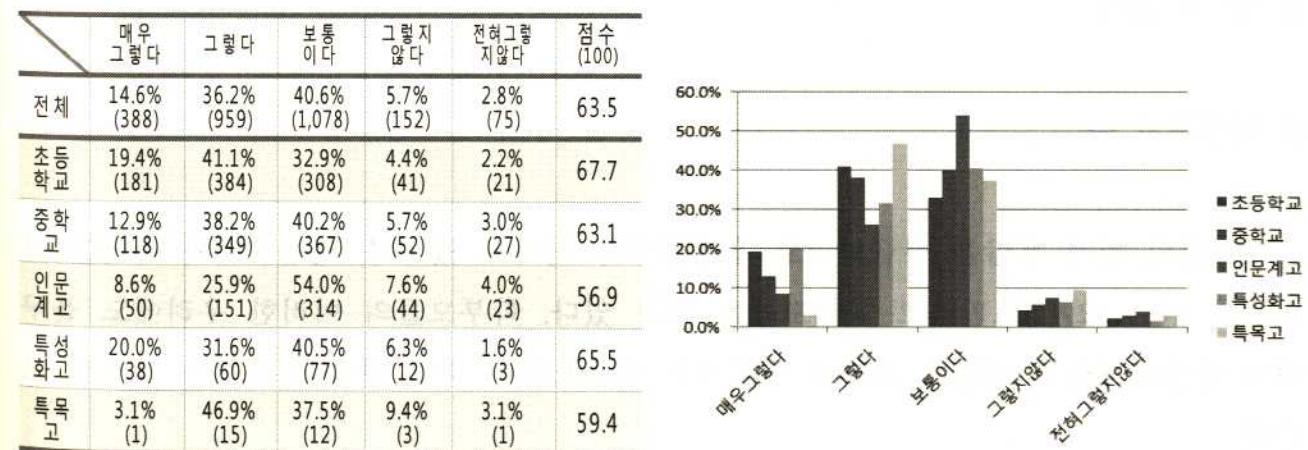
<표 II-123> 인권교육 유형(학부모)



인권교육의 형태와 관련하여 외부강사에 의한 강의는 특성화고의 경우 가장 비중이 높고, 가정통신문을 통한 인권교육은 특목고와 인문계고, 사이버 인권교육도 특성화고 학부모의 답변 비율이 가장 많았다.

### 6-4)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학생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II-124> 인권교육 영향 평가(학부모)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위의 인권교육 형태에서 가정통신문에

의한 인권교육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인문계고와 특목고 학부모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 형태와 교육 효과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7. 총평

###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이해가 저조한 편임을 알 수 있었고, 입시 부담이 큰 학교군의 학부모들의 경우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에 대하여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었다.

### 2) 차별 및 자유권

자녀가 학습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 초등학교와 특목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 학교군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제도가 다소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발길이규제, 소지품검사에 있어, 학부모들은 대체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특성화고의 경우 갈등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목고는 휴대폰 소지 등교에 대해, 학생 및 교사 설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학생복지 등

자녀들의 성적 부담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인문고계와 특목고 자녀들이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학부모들은 보고 있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담교사와의 상담에 대하여 인문계고 학부모들이 다소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급식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며, 이는 학생과 동일하다. 단, 특목고의 경우 만족도가 특별히 높게 나타난다.

### 4) 학교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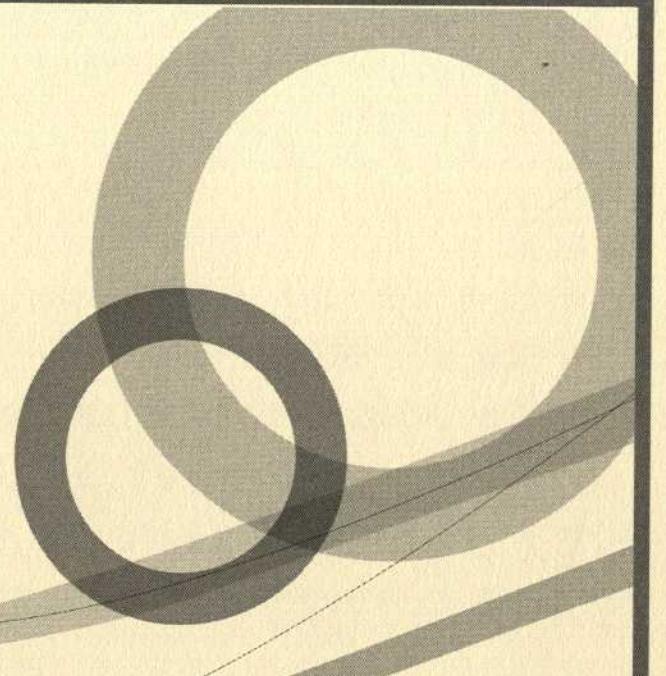
학부모들은 학생 간 신체 및 언어 폭력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학생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 5) 학생자치

학부모 설문 결과, 특목고 학부모들이 학생 자치 전반에 걸쳐 넓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특성화고의 학부모들은 학생자치가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6) 인권교육

인권교육과 관련하여는 인권교육의 형태에서 가정통신문에 의한 인권교육에서 높은 답변율을 보인 인문계고와 특목고 학부모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 3 장  
집단면접조사 결과 기초분석

### 제 3 장 집단면접조사 결과 기초분석

#### 제1절 집단면접조사 개요

경기도 내 6개 학교에 대한 집단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선정기준은 초·중고별, 도·농별, 권역별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 2개교는 혁신학교로 선정하였다. 각 학교마다 학생 10명, 학부모 10명 내외, 교사 6명 내외로 집단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지를 작성한 후 주요 학생인권 사항들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으로 학생인권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경향성을 볼 수 있었다면, 이 집단면접조사를 통하여 참여자들과 함께 각 학교의 특성에 따른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표 III-1> 집단면접조사 대상

구분 지역	조사대상	대상	인원	시간	면접대상 및 순서
성남 (1권역)	초등학교 1	학부모	10명 이내	오후 1시~4시 (대상별40분소요)	1. 학부모 (10명내외) 2. 학생 (10명내외) 3. 교사 (5명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고등학교 1	학부모	10명 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안산 (2권역)	중학교 1	학부모	10명 이내	오후 1시~4시 (대상별40분소요)	1. 학부모 (10명내외) 2. 학생 (10명내외) 3. 교사 (5명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특성화고 1	학부모	10명 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의정부 (3권역)	혁신 초등학교 1	학부모	10명 이내	오전10시~오후1시 (대상별40분소요)	1. 학부모 (10명내외) 2. 학생 (10명내외) 3. 교사 (5명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혁신 중학교 1	학부모	10명 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 제2절 집단면접조사 결과 기초분석

###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학생들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설문사항들에 대한 면접조사 속에서 어느 정도 학생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함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2. 소지품 검사, 두발 단속 등 학교생활 일반

온라인 설문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경기도 내 학교에서 기본적 학생인권에 해당하는 부문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인다.

1) 성적이나 가정형편을 이유로 한 차별은 거의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못함.

- 혁신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는 “전혀 없다”라고 바로 대답하고,
-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의 학교의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라고 대답하는 등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흔치 않았다.

2) 휴대폰의 소지는 수업시간에만 보면 소지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지품의 검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현상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 한 혁신학교의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선생님이 저희 말을 믿어 주시거든요!”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 3) 방과 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 대체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 저학년의 경우 많이 참여하나 고학년의 경우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으며,
- 특성화고의 경우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학원을 다니다 보니 참여율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

- 참고로 농촌 지역 학교의 경우 방과 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내용도 좋으나 하교 수단이 마땅치 않아, 자체 버스로 하교에서 귀가까지 책임져 주는 학원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사교육에의 의존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스쿨버스 운행시간 조정이나 연장 등 안전한 귀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 3. 학교폭력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응 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깊이 있는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관련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내용이므로 다음에서는 2개의 학교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소개한다.

#### 1) A 학교

##### ■ 학부모 면담

-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 가정에서 부모님이 모두 별 문제없이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옛날처럼 품어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있다.
  -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자녀들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이는 주변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연결된다.
- 폭력사건 이후 사후처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의 징후가 보이는 학생들에게 미리 예방차원의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운영하는 힐링센터가 있어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학생을 모두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학교가 속한 지역의 교회의 지원으로 힐링센터에 심리상담사를 파견해주고 있으며, 학생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담을 진행한다.
-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힐링센터에 얼마동안 가 있을지 결정하는데, 보통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있게 된다.
- 예전의 학교폭력과 달리 요즘의 폭력은 구조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예전에는 아이들이 싸워도 결국 서로 화해하는 과정이 일종의 성장과정이었는데 요즘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화해를 하기보다는 그저 폭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청소년기에 넘치는 에너지를 해결해줄 수 있는 마땅한 놀거리가 없어서 받은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 학부모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중학생들이 매일 학교공부와 학원을 다니는 상황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는 사실에 공감한다.

- 학생들의 에너지를 풀어줄 수 있는 놀이 및 활동을 현실에서는 오히려 학부모들이 그런 중요성을 모르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ebs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공부하기만을 요구받다보니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발생한다.

- 현재 사회분위기와 입시제도 아래에서 학생들은 다양성은 억제되고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많은 중압감을 느낀다.

-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할 시기에 입시제도 때문에 성장기회를 놓치게 된다.

□ 폭력문제를 해결하는 어른들의 자세도 문제이다.

- 문제학생을 중심으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어머니들이 보듬고 가능성은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

-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 학교에서도 학생을 먼저 체별하기보다 이해해야 한다.

□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봐야 한다.

-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접하는 폭력적인 게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조절이 필요하다.

- 아이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것은 답답한 개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싶고 다른 곳에 몰두하고 싶어서이지 순전히 게임이 좋아서가 아니다.

- 이때 아이들의 관심을 게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더라도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pc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들이

게임방에 가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왕 갈 바에는 금연인 곳이나 비행학생이 없는 쪽으로 보내준다.

- 학교에서 국영수위주로 진행되는 답답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 다른 학교에서 드럼교실을 운영해 쉬는 시간에 드럼을 칠 수 있도록 했더니 오히려 성적향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 학폭위의 처리과정과 보완할 점

- 학폭위에 참가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 가해학생도 자신의 성장환경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이 학교의 경우 웬만하면 문제학생을 전학 보내지 않는다.

- 일부 문제학생의 경우 힐링센터를 보낸다고 해도 먹히지 않는다.

- 이 문제학생의 부모에게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해도 반강제성이 없어서 잘 가려 하지 않고 사건 이후라고 하더라도 학부모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경우였다.

-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학생의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부모가 잘 이해하지 않는다.

- 학폭위는 절대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 교과부 시책에 따르면, 장난에 가까운 일도 학교폭력으로 문제화 되고 학폭위를 열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어 학생에게 낙인효과가 있다. 그런 점에서 힐링센터를 통한 해결이 더 바람직하다.

## ■ 교사면담

□ 학폭위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어야 한다.

- 학교 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깡패들과 만성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학폭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그보다 비중이 작은 사소한 다툼도 선도위원회가 아니라 학폭위가 열리게끔 되어있다. 의도치 않고 생긴 다툼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 대안을 제시한다면

- 담임선생님을 신뢰하고 담임의 주관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담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이중 부담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로부터 학폭위를 열지 않고 문제를 회피했다는 추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그 과정과 결과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그 영향이 간다.

- 담임선생님의 재량에 좀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 학교폭력사건에서 학부모는 보통 잘잘못과 관련 없이 자기자식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므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부모에 대한 교육은 현재 의무적이지 않지만 의무적으로라도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 상담교사의 필요성

- 상담교사는 현재 진로관련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학생을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상담교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

- 교육청에서 파견되는 상담사는 주로 진로관련 상담사이며, 과천시의 경우, 시 재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생활 상담 교사를 과천시 전체 학교에 1명씩 파견하고 있다. 학생들의 개인문제나 스트레스를 들어줄 수 있는 상담교사가 필요하다.

- 매일 마주쳐야하는 선생님에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전문상담교사를 한 학년에 1명 정도 배치했으면 좋겠다.

□ 학폭위라는 법이 생긴 이후 학생들의 폭력적인 움직임은 눈에 띠는 폭력을 줄어들었지만 반면 폭력이 음지화될 수도 있다.

□ 다른 행정업무 때문에 학생들과 상담할 시간이 부족하다.

- 학생지도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근무 외 수당이 나온다면 좋겠다.

- 담임을 해야 학생들과 교류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담임을 맡고 싶기도 하지만 1년에 40명의 학생을 3번 정도 면담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반끼리 한 학기에 한 번씩 단합대회를 하고도 싶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성을 쏟고 싶어도 다른 업무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해서 아쉽다.

## 2) B 학교

### ■ 학부모 면담

- 학폭위는 아직 열린 적은 없고, 현재 학부모가 참여하지는 않는다.

- 학폭위 전에 처리하려고 하며, 징계 및 상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사건 발생 후의 처리 결과를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한 달에 한번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그때 교사가 결과를 전달한다.

- 교사들도 아이들이 자율적인 학습지도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뀌는 것 같다. 학부모가 선생님과 대화할 때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보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 학교에 대한 신뢰가 간다.

- 학교 측에서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문제 중재를 잘하는 편이다. 학생이 폭력을 행사해 학부모가 불려간 적이 있는데 폭력을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말을 모두 공평하게 잘 들어주었다. 선생님이 사건의 원인을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학생들간 소통을 하고 잘못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했다.

- 폭력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학생들이 듣거나 보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불분명하다.

- 여학생 2명이 연관된 사건이 있었을 때 두 명만 따로 부르면 다른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선생님이 여학생 모두를 한 번씩 부름으로써 여학생들을 배려해주었다.

- 상근하는 상담교사가 1명 있고 작년 9월에 왔다.

### ■ 학생 면담

- 먼저 학생들이 잘 모르게 처리한다.

- 교감, 교장이 강제 전학 등의 징계처리를 결정한다.

- 교실 밖으로 학생들이 나와서 서로 화해하게끔 유도했으나 실제적으로 잘 해결되지는 않았다.

-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처리과정을 학생들도 알았으면 한다. 우리는 알았으면 하지만 당사자는 싫어할 수도 있고 편이 나뉠 수도 있다는 점을 배려했으

면 좋겠다.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소문으로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발표를 하지 않으면 와전된 사실을 들을 우려가 있다.

#### 4. 체벌 및 상벌점제

##### 1) 체벌 관련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직접적인 형태의 체벌은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쩌면 체벌의 경험을 묻는 것이 면접 참여자들에게 진부한 질문으로 느껴질 정도로 체벌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현상적으로는 이제 소멸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체벌 금지와 이를 대체할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의 양은 온라인 설문의 의견제시에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를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분류하여 본다면 ①혁신학교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는 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오랜 기간의 인내와 교사와 학생들 간의 끝없는 소통과 그러한 소통의 일상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②그 외 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인식은 있으나, 교사 수의 부족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③아직 체벌이 아닌 다른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상상력의 외연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 ①의 사례

- 초기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5년째 운영되어 온 학교이다.
-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에는 상이나 벌, 시험 등이 없다고 하며, 여타 체벌이나 교사의 폭언 등은 전혀 없으며 이따금 수업에 방해가 되면 뒤에서 많게는 5분까지 서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본인을 포함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
- 학부모들은 이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밀착도가 높아 소통이 원활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업을 쉬더라도 학생과 교사가 끝없이 토론하여 해결하고, 이러한 문화에 대하여는 학부모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수업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 이러한 학교문화는 가정에서의 아이들과의 소통에도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하며, 항상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초임 교사의 경우 처음에는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아이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의 규율이 정해졌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제는 이러한 방법이 수업의 진행에도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나 교장, 교감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위와 같은 소통 문화가 유지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으며, 이 학교의 경우 현재 학급에 보조교사가 있어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따로 학생을 면담하는 등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없어 보조교사를 두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 ▣ ②의 사례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불만이 컸다. 사회적인 추세상 인권보장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증진될 것이고 체벌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인데, 인위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마치 교사가 체벌 등 학생인권과 관련한 가해자인 구도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한다.
-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체벌을 대체할 다른 학생지도 방안을 제시하여 주지도 않으면서 체벌금지라고 규정하여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대한 사기만 떨어뜨린다. 실제로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책임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막상 학생 지도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체벌로 지도하였다가 괜히 문제가 될까 두려워 그냥 그 학생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교사로서의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다.
- 인권과 관련한 교사 연수 등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받게 되고 나머지 교사는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체계인 관계로 그다지 효과가 없다.
-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체벌 이외 학생지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 학생지도 방법에 대한 고민과 자료 등을 교사간 서로 나눌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체벌과 관련하여는 자신들이 폭력에 의하여 성장하였고, 그것이 개인의 올바른 성장에 매우 유의미하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하여 가지는 애정이나 교사로서의 소명감이 매우 강한 반면, 체벌 이

외 다른 학생지도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2) 상벌점제 등

면담결과 그린마일리지제, 상벌점제에 대하여는 그 교육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상, 벌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이고 불공평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한 상벌점제의 효과에 대하여 학생들은 정작 항상 문제가 되는 학생의 경우 문제상황(수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의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즉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체벌과 같은 문제로 분명한 기준 없이 선생님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왜 벌점을 받는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기분만 나쁘다는 반응이어서 교육적 효과 없는 이름뿐인 제도라는 학부모의 평가도 있었다.

이 문제는 상벌점제가 체벌의 대체 방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만큼 체벌 금지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었다.

- 특히 초등학교나 특성화고 등에서는 상, 벌의 유인요인이 없다고 하며
- 또 다른 체벌 대체 방안인 자치 법정의 경우 학생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하여 도입되는 것이 아닌 하향식 제도로 출발할 경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 C 학교 학생들의 의견 중에서

- 그린마일리지제의 기준을 고치고 지키려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행동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납득이 필요하다.
-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것이 효과적이고 만족스럽다.
- 아이들이 납득할만한 상황에서 체벌을 해야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것

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상벌제가 별로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 □ D 학교 교사들의 의견 중에서

- 벌점이 많이 누적되면 성찰교실에 들어가는데(무언가 만들기, 음악활동을 한다) 시간이 없을 경우 청소로 대체하게 된다.
- 아이들에게 통제수단이 될 뿐 성장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상벌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벌점을 줄 경우 확실한 통제효과가 있고 잘 했을 때 상점을 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 성찰교실로 방과 후에 미술, 음악, 체육, 국어선생님과 함께 일정한 활동을 하게되면 같이 학생과 시간을 보내면서 교감을 하기도하고 지도효과가 있었다.
- 하지만 방과 후에 바쁜 선생님의 시간을 빼앗아서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결국 봉사나 청소로 대체하게 되었다.
- 대안으로 독서를 시키거나 영상을 시청하거나 라면을 같이 먹기도 한다.
- 마지막에는 성찰교실로 부모님이 8시쯤 데리러 와야 한다. 부모님이 와서 선생님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지만 부모가 찾아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3) 학원에서의 체벌

일부 학부모 면접에서, 일부 학원의 경우 체벌이 가해지고 있으며, 일부러 그런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일부 학부모의 예를 들었다. 학원에서의 체벌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학부모간의 토론을 통해, 아무리 학부모와 아이의 표면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인권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논의가 모아졌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자라온 환경의 인권 기준이 낮아 자신들도 모르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 5. 학생자치

- 학생자치회와 관련해서는 학생회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였다. 일반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학교인권의 주체인 학생들 자

신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것은 학생인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나 교사가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 못지않게 학생들 스스로의 인식이 필요하며, 이는 내실 있는 인권교육과 함께 주체의 자력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모범사례들을 바탕으로 학생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 학교축제,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학교의 주요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대체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었다.
- 동아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회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나, 관련한 시설 등 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은 편이었다.
-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규칙 등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함께 규칙을 만들어가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그 경우 실효성의 확보 등 안정적인 시행이 담보되었다.

#### ▣ 혁신학교 사례 ‘다모임’

- 학교에 반장제도가 없어 학생회도 없다.
- 한 학년이 모두 모여서 생일파티도 하고 각반에서 어떤 의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모두 모여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다모임’이 있다.
- 진행방식은 각반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선생님은 별로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하는 식이다.
- 회의 주제는 학년별 규칙을 정하거나 학급에 나눠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것들이 있었다.
- 지난 해 6학년은 경주 수학여행 일정을 학생들이 모두 계획했다.

#### 6. 인권교육 등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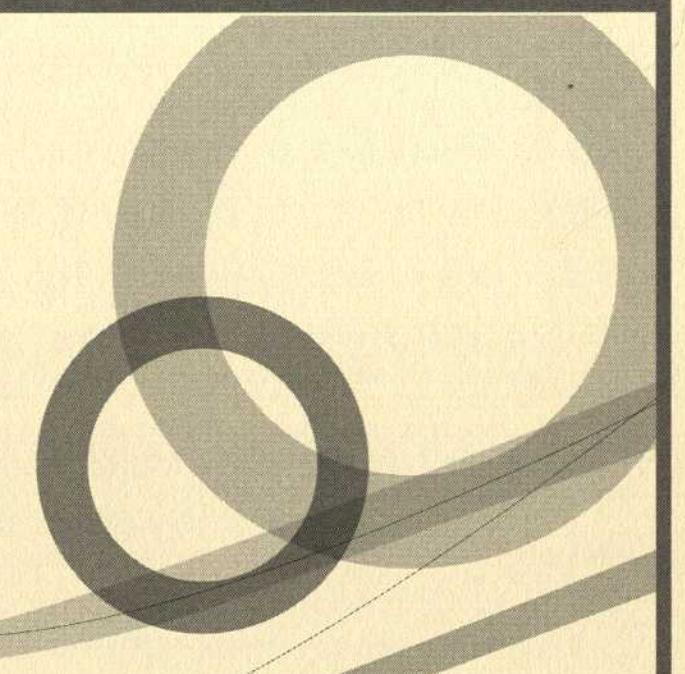
- 실제로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는 짜여진 학교 일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도 있고, 학교에서 인권교

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가는 선에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학부모들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요청하기도 한 반면, 교사들의 경우 학생인권으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인식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들은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학생지도에 매우 큰 장애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통하여 스스로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인권과 학생지도 사이에 엉켜있는 매듭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전담 학생 수,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학생지도에 할당할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과 직결된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자원 아래서라도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7. 맷으며

- 집단면접조사 결과 경기도 내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관련한 제도들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최소한 자유권과 관련한 부문에서는 표면적으로라도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안정적인 정착화를 위하여 교사들이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한 성장이 필수적인 것인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지도에 있어서의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교사간의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으로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교사와 학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 4 장  
**심층분석**

---

## 제 4 장 심층분석

2013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연차별 추이 및 답변 주체간의 비교분석, 타 기관의 전국 학생인권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정리한다. 또한 실태조사 항목간 상관 분석 등을 통해 현재의 실태조사 결과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 온라인 기초 조사결과에 더해 집단 면접조사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분석을 더하였다.

이러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성하고자 한다.

### 제1절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도의 감소
  - :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 : 교사/학부모/학생의 인지도 감소
  - : 실질적 학생인권 보장 - 인지도와의 관계성 부재
  - : 인권조례 등에 대한 내부 확산 시스템의 부재
- 학생 그룹별 조례의 학생인권보장 효과에 대한 차이
  - : 소수학생에 대한 차별의 감소
  - : 장애 학생(학부모)의 차별 체감 현존
- 교사 그룹의 학생인권에 대한 반감 증가
  - : 인권조례의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증가
  - : 교사 피로도 증가와 학생인권보장에 반감의 선형관계
  - : 젊은 교사일수록 높은 반감

#### 1.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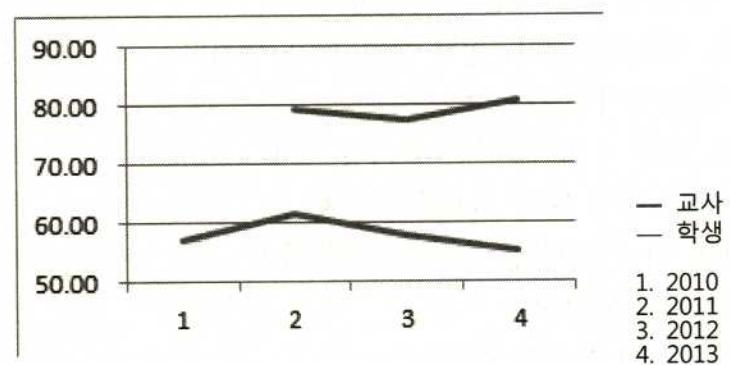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인식도 추이를 보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다. 교사의 경우 2012년 약간의 하락세에 이어 2013년 다시 안정세

로 접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 반면 학생의 경우 2011년의 상승세가 2012년부터 꺾이면서 2013년에는 다시 2011년 수준 아래로 하락하였다. 이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2010년과 별 차이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IV-1> 학생의 학생인권조례의 인식에 대한 답변에 대한 연도별 변화

<학생>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점
2010	11.9	26.9	44.4	11.4	5.4	57.13
2011	13.7	32.5	43.2	7.9	2.7	61.65
2012	15.5	24	42.3	13.2	5.1	57.95
2013	12.5	28.8	33.9	16.7	8.1	55.23

<표 IV-2> 교사/학생의 학생인권조례 인식 변화 추이



2012년 보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의 인식도는 대중매체에서의 노출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2013년도에는 대중매체에서의 노출이 급격히 줄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예견되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기본 취지인 ‘학생인권실태’와 ‘인권감수성’이라는 경기도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실질적 적용이 학교내로 흡수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와 면접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지속적인 학생인권조례의 확산과 학생인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생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인권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 교사의 인권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의 교내 활동 프로그램이나 수업으로의 통합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내부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 2. 학생인권조례의 인권보장성

### 1) 학생 및 학부모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 대하여 일반학생 그룹과 소수학생그룹(운동,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에서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며, 학부모는 더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장애학생과 그 학부모에서 두드러졌으며, 운동선수 학생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2년의 수치보다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장애학생, 운동선수의 경우도 학교정책에 더해서 사회 전반적인 인권거버넌스 혹은 인권문화로서 뒷받침될 때 실제적인 학생인권 보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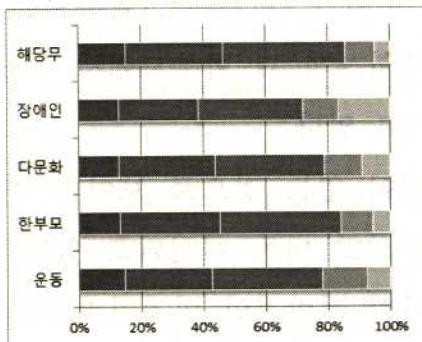
<표 IV-3>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생)

<학생>	(단위 %)				
	운동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해당 무
매우 그렇다	14.7	13.4	13.1	12.9	15.3
그렇다	28.2	31.9	30.7	25.8	31.2
보통이다	35.3	39.0	35.1	33.3	39.3
그렇지 않다	14.5	10.0	12.0	11.4	9.2
전혀 그렇지 않다	7.4	5.7	9.2	16.7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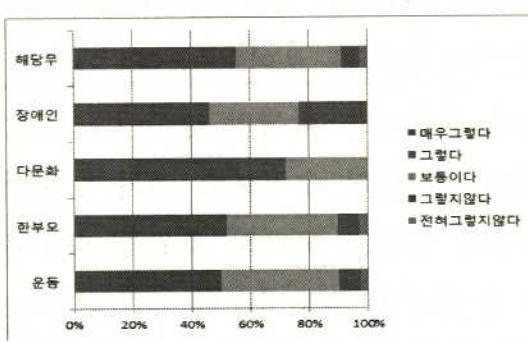
<표 IV-4>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학부모)

<학부모>	운동 1.5	한부모 6.6	다문화 1.3	장애인 0.5	해당 무 90.0
매우 그렇다	12.5	11.9	19.4	15.4	13.4
그렇다	37.5	40.1	52.8	30.8	41.8
보통이다	40.0	37.9	27.8	30.8	35.8
그렇지 않다	7.5	7.3	0.0	23.1	6.7
전혀 그렇지 않다	2.5	2.8	0.0	0.0	2.2

<표 IV-5> 학생별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



<표 IV-6> 학부모별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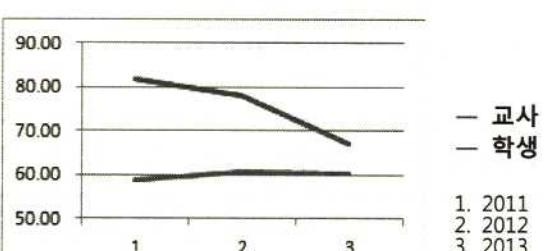
## 2) 교사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 추이가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점이 두드러진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초기인 2011년 81.88의 평점에서 2012년 78.18으로 조금 하락했는데, 2013년 다시 67.03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교사는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의 1차적 책무자라는 점에서 이는 매우 주목해야 할 수치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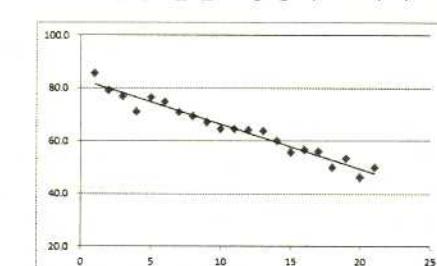
<표 IV-7>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교사)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점
2011	43.4	43.2	11.3	1.7	0.4	81.88
2012	39.3	39.8	16.4	3.3	1.3	78.18
2013	20.4	42.4	25.4	8.5	3.3	67.03

<표 IV-8> 학생인권조례 영향 평가



<표 IV-9> 조례의 인권보장성과 교사피로도의 관계



2012년도에서 이러한 추세가 발견되어, 2013년 조사에서 이러한 교사들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태도의 양상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3년도 설문에 교사 직무 피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5개 설문 항목을 편입하여 교사들의 직무피로도를 추정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에 관련한 여러 요소와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피로도가 높을수록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보장에 대하여 부정적임을 보여주며, 그래프에서 보듯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 직무피로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학생인권의 지속성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표 IV-10> 조례 및 규정 관련 교사 인식 수준 조사

교사들의 인식 수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점
학생인권조례 인식	38.7	47.5	12.0	1.4	0.4	80.6
학생생활인권규정인식	36.8	43.1	15.8	3.4	1.0	77.9
조례->학생인권보장	20.4	42.4	25.4	8.5	3.3	67.0
생활인권규정->인권존중	32.4	48.7	15.3	2.2	1.4	77.1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각각 80.6점과 77.9점의 높은 평점을 보이는 반면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한 인식이 67.3점으로 현저히 낮은 평점을 보인다. 또한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하여 조례 시행 초기 81.88점의 높은 기대치를 보였다가 점차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있어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큰 반면 이를 뒷받침해 줄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집단면접조사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

하여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V-11>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평가(지역별)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도시	농어촌	혁신학교	일반	(단위 %)	
					남	여
매우 그렇다	21	20	21	20	19	23
그렇다	42	43	47	41	43	41
보통이다	25	25	20	27	27	24
그렇지 않다	9	8	8	9	8	9
전혀 그렇지 않다	3	3	5	3	3	4
평점	67.2	66.8	67.9	66.8	66.6	67.8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한 교사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지역별 차이(도시와 농어촌), 혁신학교 여부, 학교 규모별 분류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여자 교사가 남자교사보다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을 조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교사별 특성에서 주목할 점은 교사의 연령(또는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성이 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근무년수가 오래된 교사일수록 과거의 학교 현장의 인권상황이나 인권제도와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는 점, 학생들과의 향후 기대되는 관계밀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으로 젊은 교사일수록 학생인권보장에 있어 부정적 시각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들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교사를 주체로 한 인권시스템 보강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2>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평가(규모별, 근무년도별)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해당 학년 규모					교사 근무년수				
	-30명	-100	-200	-400	400-	-2	-5	-10	-20	20-
매우 그렇다	23	20	20	21	19	13	15	17	23	25
그렇다	46	47	41	40	43	40	41	40	45	44
보통이다	20	24	27	25	27	32	29	30	22	22
그렇지 않다	7	8	8	10	8	10	13	9	7	7
전혀 그렇지 않다	4	1	4	4	3	5	3	4	3	2
평점	69.4	69.3	66.4	66.0	66.8	61.8	62.9	64.1	68.9	70.5

## 제2절 차별

- 차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감소
  - : 작년대비 향상
  - : 전국대비 경기도의 개선(~7% 향상)
  - : 장애 학생 차별의 개선이 중요 과제
- 차별 대상자(학생)의 차별 인식과 교사의 인식 차이
  - : 입시 부담이 큰 학교 유형별 차이 증가 및 인식 하락
- 학생-학부모간 인식차이와 가족과의 공유 시간 관계성
  - : 가족간 공유시간이 길수록 인식차이 감소

### 제5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동들은 누구나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4조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국가인권위 09진차 1194 결정】

- 피진정인이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학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 【국가인권위 08진차 158 결정】

-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을 성적 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학교가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다’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같은 사항에 대한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차별 대상(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상자들은 차별을 느끼는데, 차별에 대한 행위자이자 1차 책무자인 교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를 학교별로 나누어 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증가하며, 특히 입시부담이 큰 학교 일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입시에 대한 하중이 클수록 성적 등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경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특목고의 경우 입시로 인한 하중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간의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간극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아래의 설문결과가 보여 주듯이 특목고의 경우 다른 유형분류보다 두 드러지게 가족, 가장과 보내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즉 학생과 학부모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13> 차별 존재 여부(그룹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않다	평점
학생	3.9	8.3	17.9	30.8	39.1	73.2
학부모	2.2	5.4	13.9	42.1	36.4	76.3
교사	0.9	1.3	2.3	25.1	70.4	90.7

<표 IV-14> 차별 존재 여부(학교급별)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초등학교	83.0	80.9	92.2
중학교	71.1	74.6	91.3
인문계고	66.5	72.9	88.8
특성화고	68.4	72.9	89.0
특목고	63.0	75.0	87.1

<표 IV-15>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TV 시청 제외)(학생)

<학생설문결과>	거의 없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초등학교	9.1	9.0	20.8	26.8	34.3
중학교	11.7	12.6	23.0	27.2	25.5
인문계고	15.4	18.1	28.6	22.9	14.9
특성화고	19.1	16.6	22.3	20.3	21.7
특목고	26.5	24.5	12.2	15.3	21.4

<표 IV-16> 하루 평균 가장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TV 시청 제외)(학부모)

<학부모설문결과>	거의 없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초등학교	4.8	13.0	31.0	26.5	24.6
중학교	6.7	15.9	32.0	25.4	20.0
인문계고	13.1	21.1	32.3	22.0	11.5
특성화고	10.0	24.7	29.5	16.8	18.9
특목고	25.0	25.0	21.9	15.6	12.5

학교 내에서의 차별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경기도의 경우 59.1%인데 반해 전국<sup>6)</sup> 평균은 53.0%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대비 경기도가 향상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본 보고서에서 인용한 2013년 전국 데이터의 출처: 「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표 IV-17> 학교 내 차별 존재 여부(경기도/전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경기도	3.9	8.3	17.9	20.8	39.1	
전국	12.8	34.2	-	31.0	22.0	

## 2. 소수학생(장애, 다문화, 빈곤, 한부모, 조부모, 운동선수 등)에 대한 배려

###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418 결정】

- 교육받을 권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며,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장애인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통로이다.
-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을 일반학교 교육에서 배제하지 않고 그들의 욕구를 지원하면서 일반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사회정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교육받아야한다는 철학과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특수학급 및 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먼 곳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

<표 IV-18> 소수 학생 권리 보장 여부(그룹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학생	25.3	37.4	30.8	3.6	2.9	69.7
학부모	26.7	45.7	23.4	2.7	1.5	73.4
교사	52.2	38.3	8.1	1.0	0.3	85.3

일반 학생들에 대한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들은 90%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수학생에 대한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한 설문결과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 학생과 운동선수 학생의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3. 학습곤란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

### 제 8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서 말하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와 교육감은 도움 교사제, 멘토링제, 방과후 특별프로그램 등의 운영과 이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해설서 29쪽)

<표 IV-19> 학습권 보장 여부(그룹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학생	18.2	34.1	36.0	7.7	4.0	
학부모	18.2	44.0	29.8	6.2	1.8	
교사	50.7	38.7	8.4	1.7	0.6	

‘학교는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설문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정적인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긍정적인 답변의 정도에 차이가 상당한 것은 그 실효성과 관련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평가가 상반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제3절 자유권 부분에서의 학생인권

- 자유권 관련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안정화 단계에 있음.  
: 두발길이 단속, 동의없는 소지품검사, 체벌 등은 경기도 내에서는 거의 없다.
- 학교 내 휴대폰 소지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논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특목고의 경우, 휴대폰 소지에 대한 제재가 있음.  
: 학생의 성장을 기반한 휴대폰 생활지도 방안이 필요
- 교내 학생 언론 활동은 아직 시작점에 머물러 있음.  
: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어낼 언론 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못함.  
: 학생 자치와 함께 학생 언론 활동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봄.

## 1. 두발 단속

###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5.6.27.자 05진차 204,145,119(병합)결정】

-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이발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협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에 대해 일정 제도의 제한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상 곱슬머리의 여학생 등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두발과 용모는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두발 길이에 대한 단속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관계부처와 지역 교육청에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전국적 수치와 비교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의 규정의 추진상황을 상징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수치이다. 다음의 표가 보여주듯이 두발 단속에 대한 경기도 내 학교의 상황이 전국보다 현저히 향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V-20> 두발 길이 단속 여부(경기도/전국)

경 기 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평점
	2012	4.83	4.97	20.76	29.91	36.83	70.9
2013	5.0	7.4	19.5	23.9	44.2	73.7	
전국 <sup>7)</sup>	27.4	16.0		15.5	41.1	56.7	

다만 본 연구에서는 두발 길이에 대한 단속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경기도의 경우 두발 길이 단속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14년 이후에는 용모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머리모양이나 색깔을 포함한 개성추구로 논의를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선진 외국에서는 특정한 복장이나 두발 양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학습권에 명백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학교에서 용모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법리와 사회적 합의가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sup>8)</sup>

<sup>7)</sup> 두발 길이 외의 사항 즉 파마나 염색 등 용모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교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31쪽).

<sup>8)</sup> 「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8)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43쪽

## 2. 소지품 검사 등

### 제12조 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1)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2012년 대비 소지품 검사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집단면접조사에서도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가 행해진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소지품 검사를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체별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비슷하게 크고, 리카드방식의 추정에서의 수치로 보아, 대부분의 학교에만, 상승폭이 비슷하게 크고, 리카드방식의 추정에서의 수치로 보아, 대부분의 학교에서 동의 없는 소지품검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IV-21> 소지품 검사 여부(그룹별)

(단위 %)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점
학 생	2012	7.0	9.1	24.9	29.1	29.9
	2013	4.1	7.0	17.5	29.7	41.8
교 사	2012	3.1	2.8	6.4	20.3	67.4
	2013	0.9	1.0	2.2	19.4	76.6
학 부 모	2012	4.5	7.6	18.7	36.8	32.5
	2013	1.7	3.4	13.6	39.8	41.4

다만 특이한 점은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 있어 평균에 비해 10% 정도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성화고에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IV-22> 소지품 검사 여부(전체/특목고)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점
학생전체	4.1	7.0	17.5	29.7	41.8	74.5
특성화고	8.7	10.4	23.1	31.9	25.9	64.0
교사전체	0.9	1.0	2.2	19.4	76.6	92.4
특성화고	1.8	3.3	6.5	26.5	61.8	85.8
학부모전체	1.7	3.4	13.6	39.9	41.4	79.0
특성화고	3.7	8.9	26.3	32.1	28.9	68.4

### 2) 휴대폰 소지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전인 4150 결정】

학교 측은 학교 내에 휴대폰 소지 금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사실상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며, 그 설문조사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설문조사 시 설문지에 “각 가정에서 학생과 잘 의논하여 찬성하시는 쪽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는데 우리나라 가족의 의사소통 및 결정 구조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문구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이 휴대폰 학내 소지 금지 여부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대등한 입장에서 잘 논의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 측의 위와 같은 설문조사에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요즈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며, 휴대폰 사용에 따른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상당하므로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기 보다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휴대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는 학습, 호신, 대인관계, 여가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통신, 대인관계 형성, 취미 활동, 호신 수단 등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을 위하여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형식이 적절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표 IV-23>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2012/2013)

학생답변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점
2012	6.5	5.7	14.4	24.0	49.5	76.1
2013	3.3	4.0	14.6	29.3	48.8	79.1

설문결과를 보면 먼저 2012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문제시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심층대면조사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신뢰를 통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학생과 교사에게서 이야기되었다.

전국 통계와 비교해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학교별로 분석하여 보면 특목고의 경우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다는 답변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 입시위주의 교육적 환경이 이러한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다.

<표 IV-24> 휴대전화 소지 규제 여부(그룹별)

휴대폰 소지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점
학생	전체	3.3	4.0	14.6	29.3	48.8
	특목고	15.3	15.3	12.2	13.3	43.9
교사	전체	0.6	0.7	2.2	18.3	78.2
	특목고	6.9	0.0	3.4	27.6	62.1
학부모	전체	1.9	3.5	10.6	37.9	46.0
	특목고	6.3	12.5	9.4	43.8	28.1
						68.8

한편 2012년에는 휴대폰 소지 등교는 가능하나, 등교시 일괄 수거의 경우가 많아 실제 소지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2013년 집단면접조사 내

용을 보면 이보다는 수업시간에 전원을 끄게 하고 이를 어길 시 벌점 등의 제재가 따른다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휴대폰의 소지 및 사용 실태 등이 교육적 영향 및 학교생활 지도에서 점차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향후 휴대폰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생들의 성장에 기초한 인권적 휴대폰 생활지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3. 교내 언론 활동

#### 제16조 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권고사항

#####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CRC/C/15/Add.197, para.37)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이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표현 수단이므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보장여부를 조사

하였다.

<표 IV-25> 언론활동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학생/교사)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점
학 생	2012	21.77	27.73	41.76	5.59	3.15	64.8
	2013	18.3	32.0	39.0	5.5	4.5	63.8
교 사	2012	55.84	31.59	10.26	1.50	0.81	85.0
	2013	53.4	37.1	7.7	1.0	0.8	85.3

학생들의 교내 언론활동 보장에 대하여는 2012년 대비 큰 차이 없는 결과치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은 보통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교사들은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는 답변의 비율이 가장 높다. 심층면접에서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매체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교사들은 방송반이나 교지 등의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심층면접에서 학생이나 교사 모두, 학생들의 표현 욕구가 무엇이고 왜 필요 한지, 그리고 그러한 기능이 민주시민양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었다. 학생들의 자기표현 욕구가 없거나 무기력한 상황인데, 학교이전에 가정, 사회에서 학습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표현 창구의 필요성이 약해져 있어 조사시 보통이라는 답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학교가 언론의 창구를 열어 두었더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유인이 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민주시민교육에서의 고리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 언론 활동과 자치활동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이 분리되어있고, 실제 학습에서의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 제4절 학생자치

- 학생자치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
- 주요 학교행사에서의 학생들의 참여 및 주도적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학교 축제, 소풍, 체육대회 등
- 학교 운영에서의 직접 참여의 기회를 통해 학생자치의 실질적 유도가 필요

#### 제17조 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적용될 규범인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학생의 미성숙은 막연한 우려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교육의 목적은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시민의 육성에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 제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의견 수렴 등)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동을 막연히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보호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아동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동반한 아동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즉 학생을 학교 교육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기결정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학생인권을 실현하는데 필수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실효성 있는 실현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이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학내 자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26> 학생 자치활동 권장 여부(그룹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평점
학생	23.2%	34.7%	31.7%	6.2%	4.3%	66.6
학부모	21.8%	41.6%	29.3%	5.6%	1.7%	69.1
교사	60.0%	31.4%	6.9%	1.1%	0.6%	87.3

<표 IV-27> 학생회 공간 여부(그룹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평점
학생	16.1%	29.2%	35.7%	11.6%	7.4%	58.7
학부모	12.7%	33.7%	35.0%	13.9%	4.7%	59.0
교사	30.9%	29.6%	15.6%	18.6%	5.4%	65.5

<표 IV-28> 정기 학생회 여부(그룹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평점
학생	18.9%	32.7%	37.9%	6.3%	4.2%	64.0
학부모	17.3%	40.0%	35.1%	5.6%	2.0%	66.3
교사	44.7%	40.0%	11.7%	3.0%	0.6%	81.3

<표 IV-29> 학생 대표 자격제한 여부(그룹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평점
학생	7.2%	16.1%	32.9%	20.0%	23.8%	59.3
학부모	3.5%	10.9%	23.7%	33.3%	28.5%	68.1
교사	2.0%	9.7%	11.7%	28.2%	48.4%	77.9

<표 IV-30> 학생회 의견 반영 여부(그룹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평점
학생	14.7%	30.1%	42.4%	7.6%	5.2%	60.4
학부모	14.4%	37.3%	40.5%	5.5%	2.3%	64.0
교사	33.9%	46.5%	15.7%	2.7%	1.1%	77.4

<표 IV-31> 학생회 주관 행사 여부(그룹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단위 %) 평점
학생	29.0%	32.7%	28.2%	5.6%	4.6%	69.0
학부모	24.1%	38.5%	27.8%	6.5%	3.0%	68.6
교사	36.2%	32.7%	18.7%	8.9%	3.5%	72.3

앞서 학내 언론의 자유권과 관련된 설문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자치와 관련한 설문에서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는 답변 비율이 상당히 높고, 교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여준다.

이는 학생 언론 활동과 비슷한 토양에서 학생 자치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자치의 문제도 학내언론 활동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접조사시 학생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나 학생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가능성은 보여주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데, 운동회, 수학여행, 학교축제 등의 주요행사에서 학생들의 참여 및 주도적 운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특히 특목고의 경우 학생자치에 있어 두드러지게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다만 학생 대표 출마자격조건 설문은 예외).

전반적으로 학생자치에 대한 수준이 그 중요성이나 기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목고들에서의 성과에 대한 유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자치에 대한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경기도 내 학교 전체의 학생자치의 수준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 의사 표현과 참여가 학교운영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학교운영위에 학생들의 대표들을 참여시키거나, 일부 안건에 대해 학생전체의 직접투표를 진행하는 등의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

▣ 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 권한에 걸맞은 성숙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책임의식 또한 길러질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학생들도 학교를 신뢰할 수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능력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학생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한(권리)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해설서).

또한 이러한 학생자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실제로 집단면접

조사시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정책 등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임을 경험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듣고만 마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만 마는 식의 절차는 무의미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납득시키려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감 및 교육청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절 체벌 등

### 1. 학교 체벌 등

####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학생의 품위나 인격권 등을 손상시키는 언어적 폭력, 모욕감, 협박·위협 등 폭력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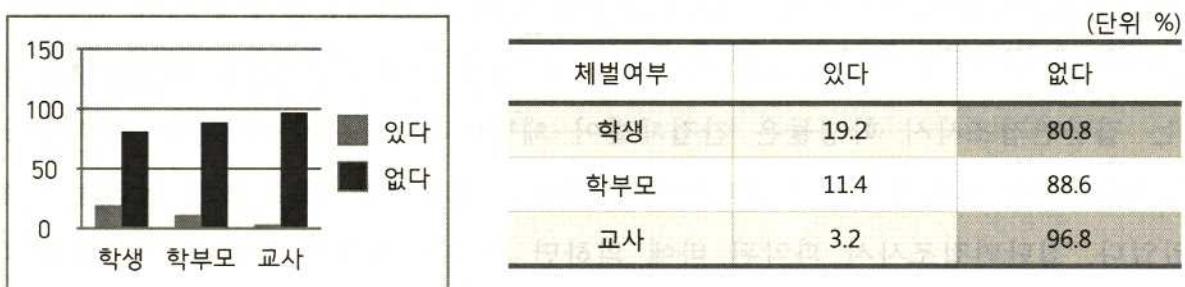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도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법원도 체벌을 원칙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을 면해주는 방식으로 체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체벌보다는 학생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일깨우고 민주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체화시키는 대안적 교육 방법, 상담교사의 활동 등 교육 여건의 개선, 효과적인 학급 경영 기법 마련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본 조례는 체벌을 금지하여 교육 현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7쪽).

#### 1) 체벌

체벌의 경우 조례 시행 후 첫 실태조사보다 체벌 현상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체벌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학생의 경우 전체의 19.2%의 학생은 학교현장에 아직 체벌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교사의 경우 3.2%만이 체벌이 있다고 답변하여 체벌에 대한 체감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학부모의 경우 그 중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IV-32> 체벌 존재 여부(그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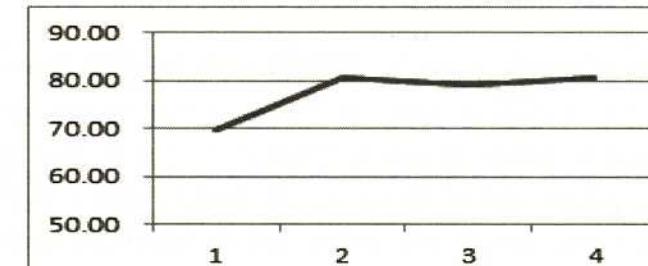
경기도 내 학교에서의 이러한 체벌의 추세는 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체벌이 학생의 인권에 있어 미치는 심각성의 측면에서 아무리 작은 수치라도 체벌이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표 IV-33> 체벌 존재 여부(연도별)

학년설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점
2010	7.2	7.7	15.5	38.4	31.1	69.7
2011	4.5	7.0	10.4	17.1	61.0	80.8
2012	20.5 (없다)			79.2 (있다)		79.2
2013	19.2 (없다)			80.8 (있다)		80.8

\*2010년과 2011년은 주1회 기준

<표 IV-34> 체벌 관련 학생인권 향상 추이



<표 IV-35> 체벌 경험 여부(경기도/전국)

		(단위 %)	
<학생설문>		있다	없다
최근 1년간 체벌 여부			
경기도	19.2	80.8	
전국 <sup>9)</sup>	23.2	76.8	

체벌의 형태와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에 있어 회초리나 신체에 의한 체벌보다는 단체기합이나 벌 등의 간접체벌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간접체벌과 관련하여는 집단면접조사시 학생들은 간접체벌이 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교사의 경우 심리적으로 간접체벌까지 체벌로 규율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었다. 집단면접조사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교사의 이러한 심리적 저항감은 학생지도에 있어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교육행정당국은 교사들의 이러한 한계상황을 이해하고, 체벌 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학생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그 가능 요인들을 교사들에게 공감시키고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IV-36> 체벌 유형(그룹별)

체벌형태		회초리	신체 이용	(팔굽혀 펴기 운동장 뛰기)	단체 기합	(단위 %)
학생	6.7	7.7	9.6		8.0	
학부모	2.9	3.0	6.3		6.6	
교사	0.7	0.6	3.0		0.3	

#### <체벌을 극복한 모범 사례>

- 이 학교는 초기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혁신 5년차를 맞고 있는 초등학교였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집단면접조사에서 모두 학내 체벌이 전혀 없음에도 학생지도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 교사들에 확인한 결과, 학교 내에서의 규칙은 학생 전체가 모여 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생길 경우 수업을 멈추고 그 상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대화를 계속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 상황의 원인을 야기한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재발의 가능성도 줄게 되어 이후 수업의 진행이 훨씬 효율적이게 된다고 한다.

9) 9) 「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처음에는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방침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현재 학부모들의 경우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을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 다만 아주 힘든 상황일 경우 보조교사가 있어 이러한 구조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예산의 부족으로 보조교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적정한데 이를 넘으면 교사가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를 세분의 교사가 별도로 전담해 처리해 오고 있는데, 매일의 학습 컨텐츠를 준비해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행정업무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생 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큰 장애요인이다.

#### 2) 언어폭력

한편 교사의 언어폭력에 대한 학생 설문의 결과 2012년 73.98의 평점에서 2013년 77.20의 평점으로 상당한 폭으로 향상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사의 언어폭력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 중 그 횟수에 대하여는 월1회 정도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상시적인 학교생활에서 교사들이 학생에 대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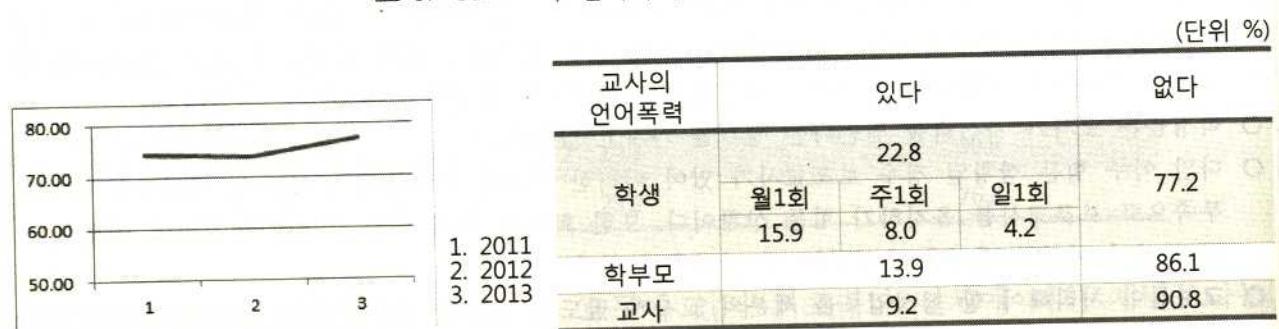
<표 IV-37> 교사 언어폭력 존재 여부(연도별)

<학생설문> 교사의 언어폭력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단위 %) 평점
2011		6.5	10.2	13.3	18.9	51.1	74.48
2012		6.7	12.1	12.2	16.6	52.5	73.98
2013		22.8			77.2		77.20

그러나 체벌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언어폭력의 문제도 학생과 교사 간의 체감도에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각자의 입지에 따른 차이로 기인한 것이겠지만 특히 그로 인한 언어폭력의 범주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성이 있다.

한 예로 집단면접조사 시 어느 학부모는 혁신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여 교사의 ‘이 자식아’라는 발언에 놀라서 ‘선생님이 욕을 한다’고 표현하였다며 당황스러웠다는 경험을 이야기했다.

<표 IV-38> 교사 언어폭력 존재 여부(그룹별)



체별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언어폭력 문제도 다음 표와 같이 경기도가 전국의 추세에 비해 향상도에 있어 약간 앞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39> 교사 언어폭력 존재 여부(경기도/전국)

<학생설문> 교사의 언어폭력	있다		없다		(단위 %)
	경기도	전국 <sup>10)</sup>			
	22.8	28.8	77.2	71.2	

## 2. 학원과 가정에서의 체벌 등

### 1)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

아래의 설문결과가 보여주듯이 전체 학생의 70%가 넘는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학원은 학교와 더불어 주요한 일상공간임에도 학원에서의 학생인권 침해의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학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V-40> 학원강사 폭력 존재 여부 및 빈도(학생/학부모)

	있다		없다		학원 다니지 않음	(단위 %)
	월1회	주1회	일1회			
학생	10.2			61.9	27.9	
	8.5	2.9	4.5			
학부모	5.5			68.9	25.6	
	6.1	2.1	1.2			

10) 「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인권친화적 학교+너무 운동본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표 IV-41> 학원강사 폭력 존재 여부(학교급별)

	있다	없다	학원다니지 않음	평점	(단위 %)
전체	10.2	61.9	27.9	85.9	
초등학교	11.2	70.4	18.4	86.3	
중학교	13.8	59.2	27.0	81.1	
인문계고	6.4	59.1	34.5	90.2	
특성화고	2.8	47.3	49.9	94.4	
특목고	7.1	66.3	26.5	90.3	

전체적으로 10% 정도의 학생이 학원에서의 체벌 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의 비율을 제외한다면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30% 이상이 체벌 등이 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학원에서의 체벌 등의 문제가 학교에서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집단면접조사 시 여러 차례 부모의 동의하에 체벌을 가하는 학원들도 있으며, 심지어 체벌로 아이들을 다스리는 학원을 선호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이는 체벌에 대하여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체벌에 의하여 성장한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학창시절의 인권문화 수준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문제가 컸다.

더욱이 학생설문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체벌 등이 존재한다는 답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자아형성의 초기인 초등학생과 한참 사춘기로 가치관 정립의 혼동기인 학생들에게 이러한 체벌과 언어폭력은 그들의 건강한 인격 형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 2) 가정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

가정에서의 체벌 등의 문제는 자녀를 훈육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관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따금 그러한 사고방식의 왜곡으로 자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 체벌 등의 문제는 그것이 아동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가정 내에서의